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입주자 모집공고



- 본 아파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부적격 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관련 안내사항

-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는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hillstate.co.kr/s/#gwanggyojoongang>)으로 운영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http://www.hillstate.co.kr/s/#gwanggyojoongang>)을 통해 분양일정 및 청약안내, 상품안내 등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분양관련 사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 운영으로 인한 전화상담 신청의 폭주로 대기시간이 다소 길어질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예비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운영 관련 안내

-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 자격확인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실 경우, 당첨자 자격검증 및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오니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 방문은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o.kr/s/#gwanggyojoongang>)를 통해 사전예약하신 당첨자분께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가능 기간에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분들은 홈페이지를 통한 방문시간을 지정하여 예약하여야 하며 예약하신 날짜 및 시간 외에는 관람이 불가합니다.
- 당첨자 발표 후 견본주택 예약 방문 시,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외 동반자 1인까지만(총 2인) 입장 가능합니다. (영·유아 자녀도 1인으로 산정합니다.)
- 예비당첨자의 자격검증 서류제출 및 동호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당첨자 및 일반공급 예비당첨자 공통)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예방을 위한 안내사항

- 견본주택 방문 시 아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입장이 제한됩니다.
-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을 경우
- 견본주택 입장 전 열화상 카메라 또는 비접촉 체온계 측정을 통한 체온이 37.5도가 넘을 경우
- 최근 14일 이내 해외(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감염지역)에 체류한 경우
-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코로나19 국내 집단 발생과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발열 및 호흡기증상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상이 있는 경우
- 기타 사업주체 등이 요구한 사항에 불응할 경우
- 2020.10.12.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에 따라 마스크 미착용 및 불응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 및 제83조 제4항에 의거하여 조치됩니다.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 확산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입주자 자격검증을 위한 당첨자 서류접수, 공급계약 일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될 경우 힐스테이트 광고중양역 퍼스트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별도 안내할 예정입니다.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및 계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고객센터(031-294-1200)등을 통해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관련하여 자세한 안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나,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하여 정확하지 않은 정보제공으로 청약관련 사항에 대한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객 여러분께서는 청약과 관련한 상담은 청약의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 청약자 본인이 입주자 모집공고를 통해 **청약자격 등을 숙지하시어 주민등록표 등본·초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및 소득 관련 서류 등을 발급받아 직접 확인하신 후 신청하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및 착오 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콜센터(1644-7445)는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이용안내 및 기본적인 청약자격 상담을 하고 있으며 고객 상담 과정에서 청약자 개인의 다양하고 복잡한 상황에 대한 정확하지 않은 정보의 제공으로 일부 착오 안내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청약콜센터 상담내용은 법적 효력이 없으므로 참고자료로만 활용해 주시기 바라며 청약자격 미숙지, 착오신청 등에 대해서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으니** 자세한 문의사항은 사업주체를 통해 확인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2021.07.05.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되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릅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1.09.02.입니다.(청약자격조건의 기간, 나이, 지역우선 등의 청약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며,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고,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멸기간 이내에 소멸을 완료하여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 등·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고 택지개발지구)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무주택 세대 또는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만 1순위 청약 가능)
- 해당 주택건설지역(광고 택지개발지구)은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가점제 청약이 불가하며,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1순위 자격에서 제외됩니다.
- 본 아파트는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의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해당첨 제한을 적용받게 되며 기존 주택 당첨으로 인해 해당첨 제한 기간 내에 있는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당첨된 주택의 구분(「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적용기간(당첨일로부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제1항제6호),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제1항제3호)	10년간

* '20.04.16. 이전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신청하여 입주자를 모집한 경우, 해당첨 제한 적용기간은 종전의 규정을 따르므로 과거 당첨된 주택의 해당첨 제한 기간은 당첨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문 또는 청약홈 >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메뉴를 통해 개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 및 제34조에 의거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에 공급하는 주택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각 해당시)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의 30%를 우선 공급(광고신도시 지역우선공급주택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편면적 배분방식 결정배분비율(수원시 88%, 용인시 12%)]하며, 경기도에 2년 이상 거주한 자[2019.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자]에게 20%를 공급(수원시·용인시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한 자)에게 공급(경기도 2년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단위 : m², 세대)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총 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해당지역 우선공급(30%) 배분비율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합계		합계	수원시	
											88%	12%
060.9700A	60A	33	3	3	7	1	5	19	14	4	4	-
060.9000B	60B	22	2	2	4	-	3	11	11	3	3	-
069.9200	69	52	5	5	10	2	8	30	22	7	6	1
084.5600	84	104	-	-	-	-	-	-	104	31	27	4
합 계		211	10	10	21	3	16	60	151	45	40	5

※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수원시·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을 함에 있어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지역배분 비율[광고지구 지역우선 공급주택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편입면적 배분방식 결정배분비율(수원시 88%, 용인시 12%)]에 따라 동일 순위에서는 공급세대 기준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타경기 또는 수도권 거주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 일반공급 세대 중 해당지역 우선공급 수원시 또는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을 함에 있어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지역배분 비율[광고지구 지역우선 공급주택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편입면적 배분방식 결정배분비율(수원시 88%, 용인시 12%)]에 따라 60A, 60B 주택형의 경우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69 주택형 1세대, 84 주택형 4세대가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배정되어 우선 공급됩니다.

■ 해당지역 거주자 자격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 또는 용인시 어느 한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자 중 해당지역 계속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인 자로 제한됩니다.(※ 수원시와 용인시에 모두 거주한 사실이 있는 자라 하더라도 두 지역에 각각 거주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는 것은 불가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만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거주자 여부를 판단합니다.)

* 예시 용인시 거주(2019.09.02~2020.09.02) + 수원시 거주(2020.09.03~2021.09.02) 거주자의 경우 수원시(수원시 2년 미만) 해당지역 우선공급 신청 불가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화성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20.07.24. 시행)에 따라 수원시 망포동 39-50번지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표 행정구역상 주소지가 수원시 망포동에서 화성시 반정동으로 변경된 자)가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해당지역(수원시)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수원시)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단, 화성시 반정동에서 수원시 망포동, 신동, 곡반정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는 행정구역 변경일로부터 해당지역(수원시)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경기기타(2년 이상거주자)지역 또는 기타지역(2년 미만 거주자)으로 청약신청 하여야 합니다.

■ '경기도 수원시와 용인시의 관할구역 변경에 대한 규정'(2019.09.13. 시행)에 따라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에 한하여, 본 입주자모집 승인권자의 지침에 따라 행정구역 변경 전 거주자(*행정구역 경계조정에 의해 주민등록표상 주소지가 수원시 원천동에서 용인시 영덕동으로 변경된 자)를 해당지역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본 아파트의 수원시 지역 우선 공급대상에 포함합니다.

▶ 수원시 원천동 42번 국도 준주거지역 일대 행정구역 변경대상 구역 내 거주자 : 행정구역 변경 전 수원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수원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수원시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용인시 영덕동에서 수원시 영통동으로 행정구역이 변경된 구역 내 거주자 : 행정구역 변경 전 용인시 거주기간과 변경 이후 해당구역 내에서 연속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거주기간이 용인시 우선공급 거주기간을 충족할 경우 해당지역 용인시 우선순위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5항 및 제23조제2항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서를 사업주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장기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광고 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원시·용인시에 최근 2년간 계속하여 거주하여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대상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부정 당첨자에 해당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입국사실증명서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로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2020.09.29.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7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조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장모, 시부.시모, 조부.조모, 외조부.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딸, 사위.며느리, 손자.손녀, 외손자.외손녀 등

-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2, 제23조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소유 여부 판정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소유 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7의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 수도권 외 지역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합니다.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조회, 제출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체결 불가, 일정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선정 제한 등)을 받으니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24개월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2순위)
세대주 요건	-	-	-	필요	필요	필요	-
소득기준	-	-	적용	-	적용	-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24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은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 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 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 금융인증서 또는 ③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	○	○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	○	X

- 2018.05.04 신설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2에 의거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격 9억원 초과 주택은 특별공급 세대를 배정하지 않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봅니다. (다만, 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배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시 최하층의 주택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제1항제1호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중복청약접수 관련
 - 청약 신청접수는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신청 할 경우에는 모두를 무효처리 합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당첨자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시에는 모두 무효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될 경우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동일 주택에 동일인이 서로 다른 유형의 특별공급 중복 청약 시 모두 무효 처리되오니 청약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동일 공급유형으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주택 포함)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되는 경우 모두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청약자(세대주)와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의 세대주)가 각각 청약하여 당첨자 발표일이 다른 경우 선 당첨 인정, 후 당첨은 부적격(재당첨 제한)으로 처리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건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만 건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단, 건본주택 현장 접수시에는 모든 자격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접수하여야 하며 인터넷 청약 가능시간(08:00~17:30)과 현장 접수 가능시간(건본주택 10:00~14:00)이 다르니 접수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본 아파트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의거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본인과 세대원 주택소유'를 점수로 계산하여 당첨자를 선정하는 '청약 가점제도'가 적용됩니다. 전용면적 85㎡이하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수의 100%를 가점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고, 85㎡초과의 경우 일반공급 주택 수의 50%를 가점제 적용하여 입주자를 선정하며, 가점제 신청자 미달 시에는 추첨제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제1항 및 제26조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수의 50퍼센트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 때까지로 함)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o.kr/s/#gwanggyojoongang>)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처리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투기과열지구 내 공급 주택은 500% 예비입주자 선정합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500%까지 지역 구분 없이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구분없이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선정내역은 무효처리됩니다.
- 2021.05.24.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과거 특별공급을 받은 자는 다시 특별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단, 공급규칙 제35조제1항제12호부터 제14호까지, 제27호의2, 제36조제1호 및 제8호의2에 따라 주택을 특별공급하는 경우는 가능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2020.10.27. 개정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규제지역(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내 주택 거래신고 시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이하 '자금조달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출 의무화로 투기과열지구인 경기도 광교택지개발지구는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매매 계약(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주택 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서 및 자금조달계획서 기재내용에 대한 객관적 진위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 제출을 의무화 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시 계약체결 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500만 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8년	8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계약자)의 당첨(계약) 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 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 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 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임의공급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제한 등(당첨 제한 또는 청약자격 제한 등의 기간이 두 가지 이상일 경우에는 그중 가장 긴 제한 기간을 적용)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시행령」 제73조 및 [별표 3] 제4호 가목에 의거 수도권 내 공공택지 및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민영주택으로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부터 8년간 전매가 금지됩니다. (단, 향후 관련 법령 등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거주무기기간 : 본 아파트는 「주택법」 제57조의2 제1항 및 「주택법 시행령」 제60조의2 제1항에 의거하여 수도권에서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주택으로써 주택법령상 해당 주택의 최초 입주가능일부터 3년동안 계속하여 해당주택에 거주하여야 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
 - 재당첨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 주택형별 재당첨 제한 기간 내에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되,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이 아닌 지역에서 공급되는 민영주택은 제외한다)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향후 「주택법」 및 관계법령 개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 54조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조 제2항 제1호·제2호·제4호·제6호, 같은 항 제7호 가목(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으로 한정한다) 및 같은항 제8호의 주택, 제47조에 따라 이전기관 종사자 등에 특별공급되는 주택,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토지임대주택,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주택,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
 - 재당첨 제한 기간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되는 분양가상한제 적용주택으로서 당첨일로부터 10년간 재당첨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자의 청약 제한 : 재당첨 제한 대상주택에 당첨된 자 및 당첨된 자의 세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7조의3(불법전매 등으로 계약 취소된 주택의 재공급)에 따른 당첨자의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및 그 배우자만 해당함]에 속하여 재당첨 제한 기간에 있는 분은 본 아파트 청약이 불가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1순위 청약 자격 제한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가점제 당첨 제한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아파트에 가점제로 당첨된 자 및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 되오니, 당첨자 본인 및 그 세대에 속한 자가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당첨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가점제 당첨자 및 그 세대에 속

한자는 2년간 가점제에 의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됩니다. (2017.09.20.이후 모집공고 승인받은 민영주택의 가점제 당첨자부터 적용)

■ 경기도 수원시 광교택지개발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 대출제한이 적용됩니다.

(단, 대출 제한사항은 향후 관계법규 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투기적발자 처벌(「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 받게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10년의 범위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의 입주자 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 불법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개업공인중개사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정지, 등록취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법 위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 포함)가 받은 손해에 대해서는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공급신청자별 청약접수 일정이 다르므로 반드시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청약신청 일정 등을 확인하시고, 해당 순위 접수일에 접수하지 않아 발생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2021.05.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추가선택품목별로 구분해 비용을 표시하며, 둘 이상의 추가선택품목을 한꺼번에 선택할 수 없습니다.

■ 2020.0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2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는 최초 청약 신청 접수일 10일 전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안내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1순위	일반2순위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확인 서류제출	계약체결
일 정	2021. 09. 13. (월)	2021. 09. 14. (화)	2021. 09. 15. (수)	2021. 09. 29. (수)	2021. 10. 05. (화) ~ 10. 09. (토)	2021. 10. 12. (화) ~ 10. 16. (토)
방 법	인터넷 청약 (08: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홈페이지 사전예약 후 자격확인 서류지참 방문접수 (10:00~16:00)	홈페이지 사전예약 후 계약서류 지참 방문계약 (10:00~17:00)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번지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시 방문예약은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 서류제출 대상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 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견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 가능합니다.

※ 당첨자 서류제출 및 계약체결 일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상황 및 정부방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1.07.05.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1

공급내역 및 공급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수원시 건축과 - 26400호(2021.08.31.)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광고택지개발지구 C6블록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7층, 지상 20층 4개동 총 211세대
 [특별공급 60세대(일반[기관추천] 10세대, 다자녀가구 10세대, 신혼부부 21세대, 노부모부양 3세대, 생애최초 16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입주시기 : 2024년 08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함)
- 공급대상

(단위 : m²,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 표기	주택공급면적(m ²)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1000657	01	060.9700A	60A	60.9700	26.2240	87.1940	64.7908	151.9848	15.6082	33	3	3	7	1	5	19	14	2
		02	060.9000B	60B	60.9000	26.5406	87.4406	64.7164	152.1570	15.5901	22	2	2	4	-	3	11	11	2
		03	069.9200	69	69.9200	29.5948	99.5148	74.3022	173.8170	17.8991	52	5	5	10	2	8	30	22	4
		04	084.5600	84	84.5600	34.9938	119.5538	89.8596	209.4134	21.6470	104	-	-	-	-	-	-	104	8
합 계											211	10	10	21	3	16	60	151	16

- ※ 주택형 구분은 모집공고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홍보 제작물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므로, 청약 및 계약 시 주택형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바랍니다.
- ※ 상기 면적은 소수점 이하 단수조정으로 등기 면적이 상이할 수 있으며,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과의 합계는 약간의 오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소수점 이하의 면적변동에 따른 분양가 정산은 없음)
- ※ 상기 세대별 대지지분은 주택형별 공급면적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향후 준공 또는 소유권 이전 등기 시 사유에 따라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공급금액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 주택형 표기방식은 종전(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m²) X 0.3025 또는 공급면적(m²) ÷ 3.3058]
-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 관리사무소, 기계실, 전기실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 상기 공급세대의 청약접수는 층호별 구분 없이 주택형별 및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여 관계 법령 등에 의거하여 동·호수가 배정됩니다.
-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서 수원시·용인시(각 해당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을 함에 있어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지역배분 비율[광고지구 지역우선 공급주택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편입면적 배분방식 결정배분비율(수원시 88%, 용인시 12%)]에 따라 동일 순위에서는 공급세대 기준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타경기 또는 수도권 거주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 주택형 표시안내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60.9700A	60.9000B	69.9200	84.5600
약식표기	60A	60B	69	84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m², 원)

주택형	공급 세대수	타입	동호 (라인별)	층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20%)	중도금(60%)						잔금 (20%)
						대지비	건축비	계	계약시	1차(10%)	2차(10%)	3차(10%)	4차(10%)	5차(10%)	6차(10%)	
										2021.12.15	2022.05.16	2022.11.15	2023.05.15	2023.11.15	2024.05.16	
60.9700A	33	60A	103동 1호 104동 1호	4층	1	319,631,000	361,269,000	680,900,000	136,180,000	68,090,000	68,090,000	68,090,000	68,090,000	68,090,000	68,090,000	136,180,000
				5층	2	319,631,000	368,569,000	688,200,000	137,640,000	68,820,000	68,820,000	68,820,000	68,820,000	68,820,000	68,820,000	137,640,000
				6~10층	10	319,631,000	375,769,000	695,400,000	139,08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69,540,000	139,080,000
				11~15층	10	319,631,000	390,269,000	709,900,000	141,980,000	70,990,000	70,990,000	70,990,000	70,990,000	70,990,000	70,990,000	141,980,000
				16~20층	10	319,631,000	404,769,000	724,400,000	144,880,000	72,440,000	72,440,000	72,440,000	72,440,000	72,440,000	72,440,000	144,880,000
60.9000B	22	60B	101동 4호 102동 4호	4층	2	319,260,000	363,540,000	682,800,000	136,560,000	68,280,000	68,280,000	68,280,000	68,280,000	68,280,000	68,280,000	136,560,000
				5층	2	319,260,000	370,840,000	690,100,000	138,02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69,010,000	138,020,000
				6~10층	10	319,260,000	378,040,000	697,300,000	139,460,000	69,730,000	69,730,000	69,730,000	69,730,000	69,730,000	69,730,000	139,460,000
				11~14층	8	319,260,000	392,540,000	711,800,000	142,360,000	71,180,000	71,180,000	71,180,000	71,180,000	71,180,000	71,180,000	142,360,000
				4층	4	366,545,000	407,755,000	774,300,000	154,860,000	77,430,000	77,430,000	77,430,000	77,430,000	77,430,000	77,430,000	154,860,000
69.9200	52	69	101동 3호 102동 3호 103동 2호 104동 2호	5층	4	366,545,000	416,055,000	782,600,000	156,520,000	78,260,000	78,260,000	78,260,000	78,260,000	78,260,000	78,260,000	156,520,000
				6~10층	20	366,545,000	424,255,000	790,800,000	158,16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79,080,000	158,160,000
				11~15층	14	366,545,000	440,755,000	807,300,000	161,460,000	80,730,000	80,730,000	80,730,000	80,730,000	80,730,000	80,730,000	161,460,000
				16~20층	10	366,545,000	457,255,000	823,800,000	164,760,000	82,380,000	82,380,000	82,380,000	82,380,000	82,380,000	82,380,000	164,760,000
				4층	8	443,296,000	483,004,000	926,300,000	185,260,000	92,630,000	92,630,000	92,630,000	92,630,000	92,630,000	92,630,000	185,260,000
84.5600	104	84	101동 1,2호 102동 1,2호 103동 3,4호 104동 3,4호	5층	8	443,296,000	492,904,000	936,200,000	187,240,000	93,620,000	93,620,000	93,620,000	93,620,000	93,620,000	93,620,000	187,240,000
				6~10층	40	443,296,000	502,704,000	946,000,000	189,2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94,600,000	189,200,000
				11~15층	28	443,296,000	522,404,000	965,700,000	193,140,000	96,570,000	96,570,000	96,570,000	96,570,000	96,570,000	96,570,000	193,140,000
				16~20층	20	443,296,000	542,104,000	985,400,000	197,080,000	98,540,000	98,540,000	98,540,000	98,540,000	98,540,000	98,540,000	197,080,000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 이전등기비용, 취득세가 미포함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발코니 확장비용 및 추가선택 품목이 미 포함된 금액이며, 별도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공통 유의사항

- 상기 세대별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벽체, 엘리베이터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주차장,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주택으로 상기 주택형 별 공급금액은 「주택법」 제57조 제3항에 따라 산정한 분양가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차등을 두어 책정한 금액입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공히 소유권이전 등기비용, 취득세, 기타 제세공과금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상기 공급금액에는 마이너스 옵션품목이 포함된 가격이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분양계약자 선택사항입니다.
- 공급계약과 관련한 인지세 및 각종 제세공과금은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납부기한 내 분양계약자가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 각 세대별 기타공용면적은 기타공용면적을 세대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한 것으로 실제 면적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면적 배분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세대당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은 인허가 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 시 공급면적 및 대지면적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69타입이 건립되어 있으며, 미건립 타입은 견본주택 내 모형 및 인허가기관 최종 승인도서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주택의 서비스면적(발코니 등)은 세대별로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층수는 건립 동별, 코어별 해당 주택형이 속한 라인의 최상층 기준입니다. (필로티 있는 동은 해당하는 층, 호수를 적용하여 산정하였으며, 실제 층수에 해당하는 층, 호수를 고려하여 분양가를 산정)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 공사비(부지매입비를 제외함)의 50%이상 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 되어야 한다.)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습니다. 다만, 임시사용승인 또는 동별사용검사를 받아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을 수 있습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위 단서조항은 적용되지 아니함)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및 잔금 납입 약정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함)
- 분양대금의 중도금 및 잔금을 약정된 납부일에 지급하여야 하며, 선납에 따른 할인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자가 장래에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지정하는 자에게 주택건설 사업부지(지상 건축물을 포함한다)를 신탁하는 경우 입주예정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주택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시 기준이 되는 면적은 주거전용면적이고, 연령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으로 하며, 당첨자 중 부적격 사유가 있는 것으로 통보받은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 정한 소명기간 이내에 부적격 사유가 없음을 소명한 경우에만 계약체결이 가능합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및 제반 사항은 설계도면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 약정의 내용을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청약(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및 분양계약 시 모든 제출서류는 원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사본 불가)

2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공고상(청약시) 주택형		60.9700A	60.9000B	69.9200	84.5600	합 계	
약식표기		60A	60B	69	84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1	-	1	-	2	
	장기복무 제대군인	-	-	1	-	1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1	-	-	-	1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	3	
	장애인	서울특별시	-	1	-	-	1
		경기도	-	-	1	-	1
		인천광역시	-	-	1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3	2	5	-	10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1	-	2	-	3	
신혼부부 특별공급		7	4	10	-	21	
생애최초 특별공급		5	3	8	-	16	
합계		19	11	30	-	60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세대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신혼부부)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생애최초)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에서 수원시·용인시(각 해당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에게 30% 우선공급을 함에 있어 경쟁이 있는 경우 해당지역 지역배분 비율[광역시·구 지역우선 공급주택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편입면적 배분방식 결정배분비율(수원시 88%, 용인시 12%)]에 따라 동일 순위에서는 공급세대 기준 수원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우선하며,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는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기타경기 또는 수도권 거주자와 경쟁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자격요건/ 자격제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으려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무주택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 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관추천 특별공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85㎡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 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85㎡초과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그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을 충족하는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청약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85㎡이하 주택형 - 청약부금에 가입 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그 납입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청약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민영 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청약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납입인정금액 범위 내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1순위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입 후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이상인 1순위자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합니다. <p style="text-align: center;">[청약예금의 예치금액]</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head> <tr> <th style="width: 25%;">구분</th> <th style="width: 25%;">경기도</th> <th style="width: 25%;">서울특별시</th> <th style="width: 25%;">인천광역시</th> </tr> </thead> <tbody> <tr> <td>전용면적 85㎡ 이하</td> <td>200만원</td> <td>300만원</td> <td>25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02㎡ 이하</td> <td>300만원</td> <td>600만원</td> <td>400만원</td> </tr> <tr> <td>전용면적 135㎡ 이하</td> <td>400만원</td> <td>1,000만원</td> <td>700만원</td> </tr> <tr> <td>모든면적</td> <td>500만원</td> <td>1,500만원</td> <td>1,000만원</td> </tr> </tbody> </table>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구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특별공급 유의사항**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1명이라도 신청하여 당첨 또는 예비당첨될 경우 모두 부적격당첨으로 당첨이 취소됩니다.
(당첨자 명단관리, 계약체결 불가, 입주자저축 효력 상실 및 재사용 불가) 단, 생애최초 및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의 경우 무주택세대주 요건 적용됨.
- 특별공급은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주택을 특별공급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1호 및 제8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특별공급 신청자는 일반공급 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되면 해당 특별공급 주택만 당첨으로 인정하며 일반공급 주택에 대한 청약은 무효로 처리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는 각 특별공급에 중복신청 할 수 없으며 중복청약 시 모두 무효로 처리합니다.
- 청약 신청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신청자에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처리된 특별공급주택 및 미계약, 계약해제 또는 해지된 특별공급 주택은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되며, 남은 주택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의 판단에 있어 당첨 검수일 계약체결 전 서류접수 또는 계약체결 전 당시 제출한 무주택 증명서류로 우선 입주자 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구성원의 주택 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청약시에는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을 유주택으로 간주하오니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특별공급 청약 접수를 하는 경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에 한함] 공급 별 구비서류 미비자는 접수가 불가하며 접수 마감 시간(10:00~14:00) 이후에는 추가로 접수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 배우자 세대구성원 등의 관계 및 신청 자격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로 별도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특별공급 청약 시 소형·저가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 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이 상이할 경우, 유주택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분양계약 체결 이후라도 당첨취소 및 계약해제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라며, 계약 해제 시 계약금, 납부 금액에 대한 별도의 이자는 지급되지 않습니다.
-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하는 자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 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당첨자로 보며 (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및 동 호수 배정 추첨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10세대**

■ **신청자격**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 특별공급 해당기관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 장애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도권(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거주자로서 특별공급 대상으로 해당기관의 추천을 받으신 분
- 소형·저가 주택 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분(단, 국가유공자, 장애인, 국가 보훈대상자,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제외)]
- (당첨예정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당첨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다른 결격사유가 없을 경우 청약 후 '당첨자'가 되는 분
- (예비대상자) 해당 기관에서 사업주체에 '예비자'로 선정·통보한 분으로서 청약 시 특별공급이 미달되는 경우 추가로 '당첨자' 또는 '예비입주자'가 될수 있으며 낙첨될 수도 있습니다.

※ **추천기관**

[참고] 선정원칙 :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 (사업주체는 선정에 관여하지 않음)

구 분	해당기관	관련법규 및 기준
10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군인복지기본법」 제10조에 따른 10년 이상 복무한 군인
장애인	서울시청 장애인 자립지원과, 경기도청 장애인 복지과, 인천시청 장애인 복지과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
국가유공자 등	국가보훈처 경기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2호부터 6호까지의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	국가보훈처 경기남부 보훈지청 복지과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22조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 기업청 성장지원과	「중소기업인력 지원특별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당첨자 선정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기관에 신청하여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관계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인터넷 청약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미신청시 당첨자선정(동·호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불가함]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인터넷 청약 신청을 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10세대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구성원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 기간 6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자녀수에는 임신 중인 태어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하였을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 낙태 관련 진단서 등)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공급신청자 본인의 자녀는 공급신청자 또는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 나머지 50%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①미성년자녀수가 많은 자 ②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 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순으로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 내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용인시(수원시 88%, 용인시 12%) 2년 이상 계속하여 거주한 공급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단, 경기도 신청결과 미달된 물량은 서울특별시 및 인천광역시 거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경기도 우선 공급세대수에서 낙첨된 수원시·용인시 및 경기도 거주자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배정된 대상 세대수 내에서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이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기준(수원시·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 기준표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별표1]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 고
		기준	점수	
계	100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 등본에 등재 공급신청자가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된 자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청약자가 성년(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 부터 무주택 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공급신청자가 성년자(만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 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 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 경기, 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본다.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 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수로 인정합니다.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소유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초본 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당해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5.8.))에 따릅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21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고 혼인 기간이 7년 이내 (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을 충족하는 자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함)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 /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 증명서 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40%이하인 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 소득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공급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3조제9호 소형·저가 주택은 동법 제28조에 따른 일반공급에만 해당하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에는 무주택으로 판단하지 않음)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자녀 유무에 따라 순위제를 규정하며, 제1순위에 우선공급 합니다.
-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민법」제855조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방법

- ▶ 제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원시·용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제2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①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34조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수원시·용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수도권지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내 거주자 50% 순으로 우선공급
 -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자녀 수 산정방법

- 공급신청자가 재혼 경력이 없는 경우 :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자녀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나타나면 모두 포함
- 공급신청자가 재혼한 경우
 1.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주민등록표등본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
 2. 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인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주민등록표등본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

3. 공급신청자의 배우자가 이전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출산한 미성년 자녀로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주민등록표등본 등재)를 이루고 있는 경우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릅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신혼부부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030,160원	7,094,205원	7,094,205원	7,393,647원	7,778,023원	8,162,39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이하	6,030,161원~7,236,192원	7,094,206원~8,513,046원	7,094,206원~8,513,046원	7,393,648원~8,872,376원	7,778,024원~9,333,628원	8,162,400원~9,794,879원
신혼부부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030,161원~8,442,224원	7,094,206원~9,931,887원	7,094,206원~9,931,887원	7,393,648원~10,351,106원	7,778,024원~10,889,232원	8,162,400원~11,427,359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236,193원~9,648,256원	8,513,047원~11,350,728원	8,513,047원~11,350,728원	8,872,377원~11,829,835원	9,333,629원~12,444,837원	9,794,880원~13,059,838원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 초과 시 일반공급 3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함.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3세대

■ 신청자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용인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주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함.)

※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아파트로서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합니다.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피부양자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합니다.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당첨자 선정방법

- 동일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나머지 50%는 수도권 지역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순으로 우선 공급합니다.

※ 주민등록표 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가점제 점수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2 나목]의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로 산정함)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5% 범위) : 16세대**

■ **신청자격**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수원시·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제28조제1항의 1순위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무주택세대주 (본 아파트는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으로 무주택세대주 요건이 필요함)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재혼을 포함한다)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하며,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한다)가 있는 자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로서 통산하여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이하인 자
- 과거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은 통산 5년의 납부실적을 의미하며, 특히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적용례 : 2011, 2013, 2015, 2018, 2020년에 각각 소득세를 납부한 경우 가능 아울러, 1년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도 1개년 실적으로 인정)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1순위에 해당하는 자(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일반공급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청약통장 가입기간 24개월 이상 경과하여 지역별, 면적별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② 무주택세대주
 - ③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는 자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해야 합니다.
(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 소형·저가주택등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9호 미적용)
-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특별공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고시 제2021-65호, 2021. 2. 2. 일부개정]에 따릅니다.

※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 분	2020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생애최초 우선공급 (기준소득, 70%)	130% 이하	7,839,208원	9,222,467원	9,222,467원	9,611,741원	10,111,430원	10,611,119원
생애최초 일반공급 (상위소득, 30%)	130% 초과~160% 이하	7,839,209원~ 9,648,256원	9,222,468원~ 11,350,728원	9,222,468원~ 11,350,728원	9,611,742원~ 11,829,835원	10,111,431원~ 12,444,837원	10,611,120원~ 13,059,838원

-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384,376)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중인 태아는 가구원수에서 제외)

■ 당첨자 선정방법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7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나머지 주택(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한다.)은 소득기준을 완화하여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 해당 주택건설지역 수원시·용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30%,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수도권 지역 거주자 50%(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순으로 우선공급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선정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에 의해 당첨자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관련 기타 예외사항

1.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2.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3.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 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 소득을 산정
4.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자녀가 청약자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자격을 인정
5.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6.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특별공급 당첨자 및 동·호수 결정 방법 유의사항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다자녀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 공급대상자와 함께 진행되며, 동·호수는 무작위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세대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여부(순번 포함)는 당첨자 발표 시 청약 Home(www.applyhome.co.kr)에서 “당첨사실조회” 개별조회방식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특별공급 각 유형에서 미달세대 발생 시 타 유형의 특별공급 낙첨자(동일한 주택형의 낙첨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경쟁 발생 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특별공급 당첨 세대의 당첨 취소, 미계약 등 잔여세대 발생 시 해당 주택형별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순번대로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잔여세대의 동·호수를 공개 후 이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됩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당첨자의 동·호 및 미계약 동·호를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잔여 물량이 있는 경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며, 공급일정은 별도로 통보할 예정입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에 의거 과거 특별공급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 등 사업주체는 그 사실을 통보하고, 통보한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었더라도 사업주체에서 통보하는 동·호수 배정일에 참석하지 않는 경우 예비입주자로서의 지위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예비입주자로서의 자격은 자동 소멸됩니다. (동·호수 배정일은 추후 통보예정)
- 기타 특별 예비입주자 관련 사항은 일반 예비입주자 처리기준을 준용합니다.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제외함. 단, 신혼부부의 경우 2018.12.1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에 따라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신혼기간 내 무주택이어야 하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고, 기존주택의 처분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원을 유지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교통부령 제565호, 2018.12.11.>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3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일반공급 신청자격 및 유의사항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합니다.
 - ※ 청약이 가능한 '성년자'란
 -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 [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이 되는 자]
 -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를 말합니다. (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광교신도시 지역우선공급주택 수원시와 용인시간 행정구역편입면적 배분방식 결정배분비율(수원시 88%, 용인시 12%)]에 2년 이상(각 해당시) 계속 거주한 자(2019.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며,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 20%,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 거주자에게 50%를 공급합니다.
 - ※ 동일순위 내 지역 우선공급 기준은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거주지역이며, 주민등록주소 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및 외국에 거주한 기간은 제외됩니다.
 - ※ 수원시·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자가 30% 우선공급에서 낙첨될 경우, 20% 물량의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자와 다시 경쟁하며, 그래도 낙첨될 경우 나머지 50% 물량의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와 다시 경쟁합니다.
 - ※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상 거주지역의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해당지역 여부를 판단하며, 경기도 거주기간 산정 시 경기도 내 시·군 사이에 전입, 전출한 경우에는 합산 가능함.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 나이는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등(초)본”을 기준으로 합니다.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됩니다.
- 청약신청 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순위로 당첨된 경우에도 계약과 상관없이 당첨자 관리되며, 당첨된 통장은 청약통장으로 효력 상실됨)
- 입주자 선정 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1순위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공급합니다.
- 2순위 : 공급신청자 전원 추첨제로 청약접수 합니다.

- 가점제 입주자 선정방법 : 가점점수의 산정기준표에 의한 높은 점수 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아파트에 공급신청하여 당첨된 청약관련 예금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 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 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당첨일부부터 '수도권 및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의 지역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입주자 저축 요건 충족 시 수도권 거주자 자격으로 청약 가능합니다.(수도권에서 건설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이 아닌 수도권 거주자로 보며, 수도권 외 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 중 전입제한일이 적용된 경우 기타지역 거주자의 자격으로 청약가능)
- 만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분양권등을 포함한다)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 입주자 저축 순위별 자격요건

구 분	순 위	주 택 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거주구분
민영 주택	1순위	전용 85㎡이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100%) 적용 ※ 단,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은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됨. (부양가족 산정 시에서 직계존속 제외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 접수하여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해당지역 (수원시, 용인시 2년 이상 계속 거주) / 기타경기 (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 / 수도권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
		1순위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분은 당 주택에 1순위 청약 불가함 (2순위로 청약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대주가 아닌 자 -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전 지역 해당, 모든 청약 대상자)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의거 재당첨 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1순위 청약 불가 	
	2순위	전 주택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 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청약제한 대상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과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등에서 당첨)되어 재당첨제한 기간에 속한 자 및 세대에 속한 자 (배우자 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는 2순위 청약불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구 분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 [민영주택의 청약 예치기준금액]에 따라 지역별, 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 종합저축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청약 자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기준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 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다만, ②에 따라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 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8호 [별표1]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1)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이상	35	
		3명	20			
③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17	2년 이상 ~ 3년 미만	4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 청약통장 - 인터넷 청약시에 자동 계산됨
		3년 이상 ~ 4년 미만	5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4년 이상 ~ 5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5년 이상 ~ 6년 미만	7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6년 이상 ~ 7년 미만	8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7년 이상 ~ 8년 미만	9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8년 이상 ~ 9년 미만	10	15년 이상	17	
총점	84					
비고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②+③				

※ 주택 소유에 관한 유의사항

- 주택 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
- 건물의 용도는 공부상 표시된 용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 주택 소유 여부를 판단할 때 분양권 및 입주권 등을 갖고 있거나 주택 또는 분양권·입주권 등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은 전국에 소재하는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신청자(세대주), 배우자(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그 세대원 포함) 및 세대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 포함됩니다.
- 주택 매매 등 처분 사실은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상 등기접수일(미등기 주택은 건축물 관리 대장 등본 상 처리일) 기준입니다.
- 주택 공유 지분 소유자 및 주택의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 소유자도 주택 소유자에 해당됩니다.
-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가 판명 내용이 다르거나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소명기간(사업주체가 소명 요청을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4항 및 제53조

- 검색 대상 : 공급 신청자와 그 세대원(배우자 또는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및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그 세대원(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및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에 한함) 전원
- 주택의 범위 :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 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및 입주권 등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부칙 제565호 제3조)
 1.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2.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매매 대금 완납일’(실거래 신고서 상) 기준 주택 소유로 봄.
- 주택 및 분양권 등 처분 기준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 등기접수일
 2. 건축물대장 등본 : 처리일
 - 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공급계약 체결일
 - 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 계약서
 - 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 대금 완납일
 - 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
 3. 그밖에 주택 소유 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
- 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봄
 -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 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
 -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 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 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
 - 나. 85㎡ 이하의 단독주택
 - 다. 소유자의 「가족관계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리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 받은 단독주택
 - ③ 개인주택 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 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 ⑤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한 자는 제외함)
 - ⑥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 ※ 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함.
 - ⑦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 등본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낡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 ⑧ 적법한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종전의「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 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축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당 지자체의 무허가 건물 확인원이나 질의회신 등) 하여야 한다. * 단, 건물등기사항 전부 증명서나 건축물대장 등본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회신 내용은 무허가 건물을 확인하는 내용이 아님.
 - ⑨ 소형-저가 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 “소형-저가 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 이하로서 아래 각목의 구분에 따른 가격이 수도권 1억3천만원(비수도권은 8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말함.
 - 단,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함)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 가격에 따름.
 -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 공시가격
 - 다.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 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⑩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자는 제외한다)
 - * 분양권 주택 소유 판단 예시(경쟁 발생 여부는 최초 접수 경쟁률로 판단)
 - 접수 결과 경쟁 발생 : 정당 계약자 및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모두 주택 소유로 봄.
 - 접수 결과 미달 발생 : 정당 계약자 주택 소유, 잔여세대 추가 계약자 주택 소유 아님.(단, 정당 계약을 포기하고 잔여세대로 계약하는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신청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시	신청 방법	신청장소 및 방법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1. 09. 13.(월) - 청약 Home 인터넷 : 08:00~17:30 - 견본주택 : 10:00~14:00	• 인터넷 청약 (PC 또는 스마트폰)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 견본주택
일반 공급	1순위	2021. 09. 14.(화) 08:00~17:30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앱
	2순위	2021. 09. 15.(수) 08:00~17:30		• 대행은행 창구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또는 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접수(은행창구 접수 불가)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시간 : 10:00~14:00)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시간 : 09:00~16:00)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순위 청약신청일 08:00~17:30)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은행 및 취급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또는 ③네이버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全 은행 청약자 : 국민은행 포함)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시] 스마트폰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여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APT청약신청」⇒「Step2. 주택형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조회」⇒「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②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세대구성원 등록/조회」⇒「세대구성원 동의」⇒「모집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 [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 분	구비 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하여야 함		
		<table border="1"> <thead> <tr> <th>인감증명 방식</th> <th>본인서명확인 방식</th> </tr> </thead> <tbody> <tr> <td>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d>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td> </tr> </tbody> </table>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판」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5 **당첨자 발표**

■ **일정 및 계약 장소**

구 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계약체결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 2021. 09. 29.(수) 확인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공동인증서/금융인증서/네이버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일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0. 12.(화) ~ 2021. 10. 16.(토) (10:00~17:00) 견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번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서류접수 시 방문일 예약은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홈페이지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자격확인 서류제출자 :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전원 - 예비입주자는 추후 별도 통보예정입니다.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상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상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공급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 정확한 당첨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 스마트폰 '청약Home' 모바일 앱 (구글플레이스토어 "청약홈 검색")에서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준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1. 09. 29. (수) ~ 2021. 10. 08. (금)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조회 → 당첨조회(최근10일) - 스마트폰앱 접속 → 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확인을 통해 당첨에 따른 각종 제한 사항은 연중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1. 09. 29. (수) 08:00 (제공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셔야 합니다.

■ 입주자 선정 방법 및 동·호수 결정

구 분	선 정 방 법
특별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기관추천특별공급, 다자녀특별공급, 신혼부부특별공급, 노부모부양특별공급, 생애최초특별공급 당첨자 선정방법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일반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입주자 선정 시 특별공급 접수종류 구분 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주택형별 공급세대의 500%까지 추첨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주택형별 전체 신청자수가 특별공급 세대수의 600%에 미달하는 경우 낙첨자 모두를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로 선정) • 특별공급 신청자가 없거나, 예비입주자 물량에 미달된 경우,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일반공급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부동산원 컴퓨터 입주자 선정 프로그램에 의해 각 순위별로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이 1순위는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2순위는 추첨제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동·호수 추첨은 특별공급 당첨자와 함께 무작위로 동·호수를 결정합니다. • 전용면적대별 가점제 및 추첨제 적용비율은 다음과 같으며, 85㎡이하 1순위 청약자는 해당 순위에서 가점제(가점점수가 높은 순)로 입주자를 선정하고, 가점제 낙첨자에 한해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거주지역 추첨제 대상으로 전환하여 입주자를 재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용면적 85㎡ 이하 : 일반공급 세대수의 100%를 가점제로 입주자를 선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4조에 따라,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현재 수원시·용인시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9.09.02.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일반공급 세대수의 30%를 우선 공급하고 경기도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한 자(2019.09.02. 이전부터 계속 거주)에게 20% 공급(수원시, 용인시 2년 이상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경기도 2년 이상 거주한 자 공급물량에 포함)하며, 50%를 수도권 거주자(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2년 미만 거주자)에게 공급(경기도 2년 이상 계속 거주 공급신청자 공급물량이 미달될 경우 수도권 거주자 공급물량에 포함)합니다. • 입주자 선정시 선순위 신청자(가점제 및 추첨제 대상 모두 포함)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600%를 초과할 경우 차순위 접수분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예비입주자 선정시 주택형별로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순위 : 일반공급 세대수의 500%까지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주택인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세대수 만큼 지역우선공급을 적용하지 않고 추첨으로 선정 • 미계약 또는 계약해제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에 참가의사를 표시한 예비입주자에 대하여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동·호수를 최초로 배정받은 예비입주자는 계약여부와 상관없이 당첨자로 관리되며 예비입주자 명단 및 순번은 당첨자명단 발표 시 함께 발표됨)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05.04. 개정된「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 제50조에 따라 특별공급도 인터넷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을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건본주택 방문접수가 가능합니다. • 인터넷 청약(한국부동산원 청약Home)의 경우 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전 사업주체로 제출하시기 바라며, 건본주택 방문 접수시에는 공급별 구비서류를 지참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방문접수는 건본주택에서만 가능하며 은행창구에서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경우 특별공급 당첨자의 세대원이 일반공급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 제58조에 따라 특별공급 당첨은

구 분	선 정 방 법
	<p>인정되나, 일반공급으로 당첨된 주택은 당첨이 취소(재당첨제한 적용)되고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특별공급 신청자가 일반공급에도 중복 청약이 가능하나 특별공급에 당첨된 경우 일반청약은 무효로 처리(특별공급에 예비입주자로 당첨된 경우에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에서 제외)하고, 특별공급 신청자가 타 유형의 특별공급에 중복 청약 시 둘 다 무효처리 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반공급의 당첨자로 선정되신 분이 이전기관종사자 등 특별공급(규칙 제47조) 예비입주자로 중복하여 선정된 경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의 입주자 선정기회는 제공하지 않습니다. • 특별공급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 접수가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소유여부의 판단에 있어 공급신청 당시 입력 값(자료)으로 우선 입주자선정을 하고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결과에 따른 세대주 및 세대원의 주택소유 여부에 따라 부적격 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분양일정상 계약일 이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에는 아파트 당첨 및 계약이 임의 해지될 수 있으며, 계약금 납입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지급이자 없이 원금만 환불하며, 당첨취소세대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 대상자로서 동·호수를 배정받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당첨자로 보며(1회 특별공급 간주), 해당 구비서류 미비 시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이 해제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7조제8항에 따라 부적격통보를 받고,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의 기간에 소명하지 못할 경우 당첨 취소 및 공급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경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자발표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예비입주자 유의사항 및 공급방법

- 예비입주자(특별공급 및 일반공급)로 선정된 자는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건분주택에 유선으로(☎ 031-294-1200) 본인의 연락처(주소, 전화번호)를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주체에서는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입력한 연락처로 연락을 할 수 밖에 없어 연락처를 잘못 기입한 예비입주자에게 불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예비입주자 공급 선정(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불참 등] 이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책임지지 않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일반공급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자의 동·호와 미계약 동·호는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됩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입주자선정(동·호수 배정 및 계약)일정은 별도 통보할 계획입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본 아파트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을 위한 추첨에도 참가할 수 없습니다.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공급 신청한 다른 주택의 당첨자발표일보다 빠를 경우 다른 주택의 당첨이 무효 처리됨] 또한, 추첨에 참가하여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다른 주택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중에서 최초 동·호수 배정 추첨에 참가하여 당첨된 예비입주자는 공급 계약체결 여부와 관계없이 당첨자로 관리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불가하고 재당첨제한 등이 적용됩니다.
- 예비입주자 지위는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부터 60일까지 유지되며, 그 기간이 경과하여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투기과열지구에서 공급하는 주택은 5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

- ※ 당첨자 자격확인서류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일정 예약 후 일자 및 시간을 확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시 계약일 예약은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홈페이지(<http://www.hillstate.co.kr/s/#gwanggyojoongang>)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해 입주대상자 확인을 위한 서류제출을 당첨자 자격검증 서류제출 기간 내에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서류제출 기간 내 미제출 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 및 추정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특별공급 예비입주자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포함)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서류 제출 및 유의사항

서류제출 기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1. 10. 05. (화) ~ 2021. 10. 09. (토) (5일간 10:00~16:00 까지) • 정당 당첨자 (특별공급, 일반공급 당첨자)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제출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건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번지
유의 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에 한해서 제출서류를 접수하며, 아래의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1.09.02.)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자격확인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인 경우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 불가합니다. • 신청자격에 맞는 제 증명서류(당첨자 제출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서류로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제 증명서류는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소명자료 제출관련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로 간주됩니다.(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봄) •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여, 청약 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합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계약 기간 내에는 당첨자의 서류 접수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당첨자 서류 제출 기간 내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셔야 하며, 미제출시에는 계약포기 의사로 간주합니다. • 서류심사를 진행하고 적격여부를 확인 받아 계약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 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됨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대상자 자격검증 제출서류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 서류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 등록증)
	○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주소변동사항사유 및 발생일(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점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본인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신청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 주민등록표 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으로 발급
		○	복무확인서	본인	•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이 그가 거주하는 지역과 다른 주택 건설 지역의 주택을 공급 받으려고하는 경우 - 군복무기간 10년 이상을 명시하여 발급
일반 허용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직계존·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본인의 주민등록표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분리세대인 경우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함)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비속	•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 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직계비속 부양가족 산정 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해외 근무자 (단신 부임)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본인	• 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 • 국내기업 및 기관소속 해외주재원 및 출장자인 경우 : 파견 및 출장명령서 • 해외취업자/사업체 운영자인 경우 : 현지 관공서 발급받은 사업 또는 근로관련서류 취업 또는 사업비자 발급내역 등 • 근로자가 아닌 경우 아래 사항 반드시 제출(해외에서 발급받은 서류의 경우 번역공증 첨부) - ①비자 발급내역 ②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 인정불가, 생업관련 증빙서류 제출이 불가능한 자 또한 인정 안됨
		○	비자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을 초과)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함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 배우자 및 자녀가 없는 경우,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 등재 확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출입국사실증명서	배우자 /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배우자가 생업에 종사하기 위해 다른 국가에서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생업사정 불인정 청약신청자가 해외에 체류 중인 기간 내 세대원 및 자녀 중 한명이라도 신청자와 동일국가 체류기간이 제4조제6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속하여 90일, 연간 183일 초과하여 거주한 경우) 단신부임 불인정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및 추천명부 대체
다자녀 가구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점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 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으로 발급
		○	한부모가족증명서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제3조에 따라 여성가족부 장관이 정하는 한부모 가족으로 5년이 경과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의 전혼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자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구성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비속의 나이가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일 경우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임신 진단서 외 접수 불가 (임신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필수)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신혼부부 특별공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가구원수 포함한 경우 자녀로 인정받고자 하는 배우자 전혼 자녀가 본인 주민등록표등본상에 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생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 서류(임신 진단서)제출 ※ 임신 진단서 외 접수 불가 (임신증명 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의료 기관명과 임신 주차 확인이 가능해야 함)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제출)
		○	출산이행 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 Fax수신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서류 접수 시 직인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제출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모두 표시되고 과거 이력 모두 포함해서 제출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발급가능 (의료보험공단 1577-1000 / 팩스 수신 문서 가능)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건본주택 비치)
노부부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을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 : 만 30세 이상 미혼의 피부양 직계비속을 과거 1년 이상 부양한 사실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전체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민등록표 등본상에 피부양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피부양 직계존속이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 분리된 경우(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재혼 배우자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분에 등재 한함)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만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피부양 직계존·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직계존속 부양가족 산정 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직계비속 부양가족 산정 시 아래의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0세 미만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미혼 자녀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생애최초 특별공급	○		주민등록표초본	직계존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신청자의 가구원수로 인정 받고자 하는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년 이상의 주소변동 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직계비속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닌 분이 동일 등분상 만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고자 할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소득산정 가구원수에 포함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입양관계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양의 경우
		○	소득증빙서류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 입증서류 (단,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추가 제출)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신청자 :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 아래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참조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신청자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제출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세대원의 성년인 직계 존·비속의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주민번호 모두 표시되고 과거 이력 모두 포함해서 제출 ※ 주민센터 및 국민건강 보험 공단에서 발급가능 (의료보험공단 1577-1000 / 팩스 수신 문서 가능)
	○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통산 5개년도 서류 *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 세무서 *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세무서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직인날인) * 이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해당 직장 / 세무서(직인날인) * 월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발급처 : 세무서
		○	비사업자확인각서	본인 및 만19세 이상 세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자(건본주택 비치)
부적격 통보를 받은자 (해당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	등기사항전부증명서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는 철거예정 증명서
		○	소형·저가주택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택공시가격증명원(개별주택가격확인서, 공동주택가격확인서 포함)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3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 확인 시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타 무주택 확인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추가사항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신청 불가함
	○		위임장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자의 인감도장 날인(건본주택 비치)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 상기 모든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서류 미비 시 접수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주민등록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각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래 참조)

① 주민등록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② 주민등록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구비서류 유의사항

- 주민등록등본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세대원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변동사유, 세대 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포함” 으로 발급
- 주민등록초본 :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과거의 주소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포함) 및 과거의 주소변동 사항 중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포함” 하여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서 : 주민등록번호 전체 표시, 기록대조일은 당첨자 생년월일부터 현재까지로 설정, 출입국기록출력 여부는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혼인사항 포함하여 “상세” 발급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증빙서류** (※ 사전서류 접수기간 내 제출)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일반근로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원본)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 ※ 매월 신고 납부대상자확인으로 발급 ② 재직증명서(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휴직기간 표시) ※ 직인날인이 없거나 직인날인 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① 해당직장/세무서 ② 해당직장
	금년도 신규취업자 또는 금년도 전직자	①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날인)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확인서 (직인날인)] ※ 근로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직자	①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 직인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 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 자 (건강보험증상 직장가입자만 해당)	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급여명세표에 사업자의 직인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세 미신고자	① 간이과세자 사업자등록증명(원본) ※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 증명(원본) 제출	① 세무서
	신규사업자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① 국민연금보험료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최근의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부분)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또는 세무서 ② 세무서 또는 등기소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원본) ②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표(직인날인) ③ 재직증명서(직인날인)	① 세무서 ②, ③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계약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표(직인날인) 또는 근로소득지급명세서(직인날인)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자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에는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 소득이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① 견본주택에 비치 ② 세무서 또는 홈텍스	

※ 상기 소득 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 증빙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직장에서 발급 받는 서류는 사업자의 직인날인이 필수이며,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서류(청약신청자 본인)

서류구분	확인자격	증빙 제출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 / 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자로 과거 1년 이내 (2020. 09. 02 ~ 2021. 09. 02)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를 납부한 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 (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신고자용) 및 납세사실증명(종합소득세 납부자) ②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 / 세무서

7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을 납부하고 필수 구비서류와 해당 추가 구비서류를 준비하시어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 기간	계약 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2021. 10. 12. (화) ~ 2021. 10. 16. (토) 5일간, 10:00 ~ 17:00	힐스테이트 광고중앙역 퍼스트 건분주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의의동 1336번지

※ 아래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자 계약 체결기간 준수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정당 당첨자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특별공급 당첨자 포함)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 이중 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 취소에 관한 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4호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토교통부 전산 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부적격 사항에 대한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부적격 사항 소명 안내 : 관련 기관의 전산 시스템과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시 입주대상자의 현황이 상이할 수 있으며, 부적격 사항 및 적격 여부 확인이 필요한 자료 통보된 경우 소명기간 내에 서류 확인 등을 통하여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서류의 결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및 기타 관계 법령에 위반될 시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되며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체결 후에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참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 ④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 기간(7일) 내에 증명 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 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건분주택에 방문하여 '계좌 부활요청서(건분주택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을 제한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여야 합니다.
- 당첨 및 계약 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 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 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자에게 귀속됩니다.
- 광고택지지구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어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내 모든 주택 매매 계약 (최초 공급계약 및 분양권·입주권 전매를 포함)의 부동산거래 신고시 '자금조달계획 및 입주계획서' 신고를 의무화하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 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따른 일정한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하여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 등**(「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전산관리지정기관에 통보합니다.
- 전산관리지정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합니다.
-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예비입주자의 신청 가점점수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재산정한 가점점수가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의 점수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인정되며, 다음 순위의 예비입주자 동점이거나 더 낮은 경우에는 예비입주자 선정이 취소되며, 동·호수 배정 참여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 **계약 시 구비사항**

구 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기준	유의사항
	필수	추가(해당자)			
공통 (특별/일반공급)		○	자격검증서류	-	• 당첨 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일체(입주대상자 자격 검증 서류 제출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	추가 개별통지 서류	-	• 기타 사업주체가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	계약금 무통장 입금증	-	• 건분주택에서 계약금(현금 또는 수표) 수납 불가,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본인	• 본인발급용 인감증명서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용도 : 주택공급 신청 위임용)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 신청 불가함
		○	인감도장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 해야 됨 ※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인감도장 생략
		○	신분증	본인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여권 등 (재외 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등록증)
		○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	본인	• 홈페이지 및 건분주택 비치 ※ 홈페이지 안내문 참조

대리인 계약시 추가사항 (본인의 모두)	○		자금조달계획서 관련 증빙자료	본인	• 자금조달계획서 상의 기재내용 관련 증빙자료(예 : 예금내역, 주식채권 거래내역 등)
	○		전자수입인지(인지세)	-	• 인지세 가산세 개정(2021.01.01.부터)으로 분양계약 시 인지세 납부, 미납일 경우 기간에 따라 최대 300% 가산세 납부 • 전자수입인지 구입처(e-revenuestamp.or.kr)-우체국-은행에서 수입인지 구입(1억원 이상~10억원 이하 : 15만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본인 발급용)
	○		위임장	-	• 견본주택 비치, 청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		대리인 신분증, 도장	대리인	• 재외 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또는 국내 거주사실 증명서) • 외국인인 외국인 등록증(또는 외국인 등록 사실 증명서)

※ 상기 제 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외국인인 공급 신청서와 동일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	하나은행	2829-1111-896837	(주)무궁화신탁	
중도금 /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분양대금 중 계약금은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일부 입금 후 계약 미체결 시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며, 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하나은행, 182-910019-57904, (주)무궁화신탁]로 관리됩니다.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1203호 홍길동 : 1011203홍길동 / 102동 501호 홍길동 : 1020501홍길동)

※ 세대별 분양대금 중 중도금 및 잔금 납부계좌(가상계좌)는 계약체결 시 세대별 공급계약서에 명기하여 고지할 예정입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상기 분양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분양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행수탁자 및 시행위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계약자 중도금 대출 불가 안내

- 정부의 정책에 따라 분양가 9억원(84㎡ 주택형)초과 세대의 경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보증 대상이 아니므로 중도금 집단 대출은 불가합니다.
- 시행위탁자와 시공사는 계약자의 중도금 납입을 위해 금융기관에 전 주택형 대출알선을 하지 않으며, 계약자는 분양대금 납부조건에 따라 중도금(잔금)을 직접 납부(이와 관련하여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미납 시 연체료 가산됨)하여야 하며, 개별적인 조달 불가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는 법률의 변경 및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어떠한 제한에도 분양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조달 하여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계약자 개별 대출 실행 시, 그에 대한 이자(보증수수료, 인지대 등)는 계약자가 직접 해당 금융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또한 금리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중도금 대출 보증이 가능한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 금리 대비 상향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이의 제기 및 계약해지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대출기관이 아니므로 분양상담사와 상담 시 대출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금융기관 개별 대출 실행 시 심사를 통하여 대출여부가 결정되며, 고객의 대출비를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시행위탁자에게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공급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발코니 확장

•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1.12.15	입주지정일
60A	5,724,000	572,400	572,400	4,579,200
60B	5,744,000	574,400	574,400	4,595,200
69	3,909,000	390,900	390,900	3,127,200
84	5,294,000	529,400	529,400	4,235,200

※ 발코니 확장공사 공사비는 공동주택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품목으로, 공급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에 따른 기존 설치품목의 미설치 감소비용과 추가 설치품목 증가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현장여건 등의 사유로 동급 또는 동급수준의 타사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주택형별 확장위치 등 세부사항은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 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는 일괄확장을 전제로 산정한 금액이며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확장 공간 제외 발코니의 위치는 홈페이지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확장 미선택시 시공 및 공간 부족등의 사유로 유상옵션 선택이 불가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발코니 외부 전면창 설치 및 발코니 확장에 따른 냉난방 비용의 상승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난간 및 새시는 기능 및 미관 개선을 위하여 형태, 재질 및 사양이 실 본 공사시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시공상(설계변경, 자재발주, 골조공사 등)의 문제로 계약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변경)계약이 불가능하며, 발코니 확장 계약 등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위세대 설계 당시 소비자의 성향 등을 고려해 발코니확장을 감안하여 설계하였으며, 발코니 확장을 선택 하지 않을 경우 단위세대의 공간 활용도가 현저히 저하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 손잡이 모양)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미확장시 각 세대의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발코니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인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코니 확장 세대는 미확장 발코니에 선홍통 또는 배수구 등이 설치됨.)

※ 발코니에는 수전, 드레인 및 선홍통이 설치되는 발코니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가 있으며, 위치와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드레인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 내에서는 물을 사용하실 수 없으며, 인접 상층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경우 입주자의 개별 시공으로 입주 후 소음, 진동, 분진 등을 초래하여 타 입주자에게 불편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법적 책임은 사업주체와 무관하며 또한 입주 후 상당기간 관리비 등이 과다하게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개별 확장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실내인테리어업체 등을 통하여 개별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칙적 시공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사업주체는 적절한 감리를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의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인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소재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	하나은행	2829-1112-526637	(주)무궁화신탁	
중도금 /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예시 : 101동 1203호 홍길동 : 1011203홍길동 / 102동 501호 홍길순 : 1020501홍길순)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182-910019-84104 (주)무궁화신탁)로 관리됩니다.

※ 발코니확장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발코니확장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발코니 확장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발코니확장의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 발코니확장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추가 선택품목 _ 시스템 에어컨(삼성전자)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구 분		설치 수량	설치 장소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05.16	입주지정일
60A, 60B	전실	일반형	4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720,000	572,000	572,000	4,576,000
		공기청정기능 포함			6,920,000	692,000	692,000	5,536,000
	부분	일반형	2	거실, 침실1	3,410,000	341,000	341,000	2,728,000
		공기청정기능 포함			4,010,000	401,000	401,000	3,208,000
69	전실	일반형	4	거실, 침실1, 침실2, 침실3	5,830,000	583,000	583,000	4,664,000
		공기청정기능 포함			7,030,000	703,000	703,000	5,624,000
	부분	일반형	2	거실, 침실1	3,520,000	352,000	352,000	2,816,000
		공기청정기능 포함			4,120,000	412,000	412,000	3,296,000
84	전실	일반형	5	거실, 주방, 침실1, 침실2, 침실3	7,480,000	748,000	748,000	5,984,000
		공기청정기능 포함			8,980,000	898,000	898,000	7,184,000
	부분	일반형	3	거실, 주방, 침실1	5,060,000	506,000	506,000	4,048,000
		공기청정기능 포함			5,960,000	596,000	596,000	4,768,000

- ※ 유상옵션 (시스템 에어컨) 설치 시 유의사항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설치되는 실외기에 스탠드형 및 벽걸이형 에어컨을 추가로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전용 제품으로 난방운전이 불가하며,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으로 인해 우물천장의 크기 및 깊이, 에어컨 설치부위의 천장 높이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외기는 선택한 실내기 소요 용량에 맞는 제품이 설치됩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상기 제조사 및 제품으로 시공될 예정이나, 제조사의 도산 혹은 설계상의 이유 등으로 부득이한 경우 동급 수준의 타사 자재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실내기의 설치장소는 임의로 변경 또는 제외할 수 없으며, 설치위치는 세대별 차이가 있습니다.(실외기는 실외기 공간에 설치)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은 유상옵션품목으로 미선택 시 2개소(거실 : 스탠드형, 침실1 : 벽걸이형) 냉매배관이 기본 제공되며 천장형 에어컨을 위한 냉매배관 및 드레인 배관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실외기 설치 시 세대설치요건에 따라 냉매배관의 설치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각 세대내 실외기실에는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 질 수 있고 운전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천장형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에어컨 배관으로 인한 환기구 위치, 스프링클러 위치, 천장배관 위치 등이 이동(변경) 될 수 있으며, 무선리모컨은 실내기 1대당 1개가 제공됩니다.

■ 추가 선택품목 _ 개별 선택품목

<단위 : 원, 부가가치세 포함>

주택형	품목 및 설치장소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05.16	입주지정일	
전 주택형 (60A, 60B 69, 84) 공통	거실	보이스홈	900,000	90,000	90,000	720,000	
		H 벨	137,000	13,700	13,700	109,600	
		살균청정환기시스템	1,930,000	193,000	193,000	1,544,000	
	욕실	비데(공용욕실)	150,000	15,000	15,000	120,000	
		식기세척기	650,000	65,000	65,000	520,000	
	주방	기능성 오븐	400,000	40,000	40,000	320,000	
		쿡탑	하이라이트 2구+인덕션 1구	460,000	46,000	46,000	368,000

주택형	품목 및 설치장소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05.16	입주지정일		
	현관	인덕션 3구	460,000	46,000	46,000	368,000		
		중문	1,050,000	105,000	105,000	840,000		
		현관 클린시스템	빌트인 클리너	230,000	23,000	23,000	184,000	
			천장형 에어샤워	500,000	50,000	50,000	400,000	
		지문인식 도어락	165,000	16,500	16,500	132,000		
60A, 60B	침실1	불박이장_슬라이딩장	2,670,000	267,000	267,000	2,136,000		
	침실3	불박이장_반침장	950,000	95,000	95,000	760,000		
	거실	아트월	포세린 타일	310,000	31,000	31,000	248,000	
			세라믹 타일	1,670,000	167,000	167,000	1,336,000	
	바닥재	강마루_헤링본 시공	거실, 주방, 복도, 펜트리	563,000	56,300	56,300	450,400	
			거실, 주방, 복도, 펜트리, 침실2 (거실+침실2 통합형)	723,000	72,300	72,300	578,400	
	창호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1,500,000	150,000	150,000	1,200,000	
	기본확장형 주방	주방상판	세라믹 타일	2,115,000	211,500	211,500	1,692,000	
			엔지니어드 스톤	918,000	91,800	91,800	734,400	
		주방벽	세라믹 타일	1,917,000	191,700	191,700	1,533,600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_RQ22K5L(R)01EC	오픈장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키큰수납장_수입하드웨어	1,690,000	169,000	169,000	1,352,000	
	수납강화형 주방	삼성전자 빌트인 비스포크 (냉동, 냉장, 김치)	오픈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키큰수납장_수입하드웨어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LG전자 빌트인 오브제 (냉동, 냉장, 김치)	엔지니어드 스톤(주방벽)	5,555,000	555,500	555,500	4,444,000	
세라믹 타일(주방벽+상판)			8,522,000	852,200	852,200	6,817,600		
	엔지니어드 스톤(주방벽)	5,783,000	578,300	578,300	4,626,400			
		세라믹 타일(주방벽+상판)	8,750,000	875,000	875,000	7,000,000		
69	침실3	불박이장_반침장	990,000	99,000	99,000	792,000		
	거실	아트월	포세린 타일	320,000	32,000	32,000	256,000	
			세라믹 타일	1,714,000	171,400	171,400	1,371,200	
	바닥재	강마루_헤링본 시공	거실, 주방, 복도, 펜트리	622,000	62,200	62,200	497,600	
			거실, 주방, 복도, 펜트리, 침실2 (거실+침실2 통합형)	802,000	80,200	80,200	641,600	
	창호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1,570,000	157,000	157,000	1,256,000	
	기본확장형 주방	주방상판	세라믹 타일	1,873,000	187,300	187,300	1,498,400	
			엔지니어드 스톤	1,047,000	104,700	104,700	837,600	
		주방벽	세라믹 타일	2,187,000	218,700	218,700	1,749,600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_RQ22K5L(R)01EC	오픈장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키큰수납장_수입하드웨어	1,690,000	169,000	169,000	1,352,000	
수납강화형 주방	삼성전자 빌트인 비스포크	오픈장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키큰수납장_수입하드웨어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엔지니어드 스톤(주방벽)	7,063,000	706,300	706,300	5,650,400		

주택형	품목 및 설치장소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10%)	잔금(80%)	
				계약시	2022.05.16	입주지정일	
84		(냉동, 냉장, 김치)	세라믹 타일(주방벽+상판)	10,941,000	1,094,100	1,094,100	8,752,800
		LG전자 빌트인 오브제 (냉동, 냉장, 김치)	엔지니어드 스톤(주방벽)	7,291,000	729,100	729,100	5,832,800
			세라믹 타일(주방벽+상판)	11,169,000	1,116,900	1,116,900	8,935,200
	침실1	불박이장_슬라이딩장		3,480,000	348,000	348,000	2,784,000
	침실3	불박이장_반침장		1,120,000	112,000	112,000	896,000
	거실	아트월	포세린 타일	390,000	39,000	39,000	312,000
			세라믹 타일	2,090,000	209,000	209,000	1,672,000
	바닥재	강마루_헤링본 시공	거실, 주방, 복도, 펜트리	827,000	82,700	82,700	661,600
			거실, 주방, 복도, 펜트리, 침실2 (거실+침실2 통합형)	1,019,000	101,900	101,900	815,200
	창호	미세먼지 저감 방충망		1,570,000	157,000	157,000	1,256,000
	기본확장형 주방	주방상판	세라믹 타일	2,182,000	218,200	218,200	1,745,600
			엔지니어드 스톤	1,179,000	117,900	117,900	943,200
		주방벽	세라믹 타일	2,463,000	246,300	246,300	1,970,400
			오픈장	1,300,000	130,000	130,000	1,04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삼성전자_RQ22K5L(R)01EC	오픈장	1,690,000	169,000	169,000	1,352,000
			키큰수납장_수입하드웨어	1,350,000	135,000	135,000	1,080,000
	빌트인 김치냉장고 LG전자_K221PR24BL/R	오픈장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키큰수납장_수입하드웨어	1,740,000	174,000	174,000	1,392,000	
수납강화형 주방	삼성전자 빌트인 비스포크 (냉동, 냉장, 김치)	엔지니어드 스톤(주방벽)	6,227,000	622,700	622,700	4,981,600	
		세라믹 타일(주방벽+상판)	9,921,000	992,100	992,100	7,936,800	
	LG전자 빌트인 오브제 (냉동, 냉장, 김치)	엔지니어드 스톤(주방벽)	6,455,000	645,500	645,500	5,164,000	
		세라믹 타일(주방벽+상판)	10,149,000	1,014,900	1,014,900	8,119,200	

※ 옵션관련 유의사항

- 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별도 계약품목의 위치 및 선택 항목은 분양 홈페이지 또는 견본주택에 전시되오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옵션 선택에 따라 일부 배선기구 수량, 종류, 위치가 상이할 수 있음)
-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주방가전 미선택시 기본형 수납공간 등으로 시공되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 선택품목 유의사항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은 아파트 분양금액, 발코니확장 공급금액과 별도이며,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관할 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본 아파트 컨셉에 맞추어 디자인하고 설치되는 품목으로 판매가 및 사양에 대해 교체 및 해약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상세내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문 표기와 설명에 한계가 있으므로 계약 전 견본주택에서 필히 확인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제품사양은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품목의 계약일정·계약내용·납부일정(계약금, 잔금 등) 및 제품에 관한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입니다.
- 추가선택품목은 입주자모집공고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의 설치 위치는 계약자가 임의로 위치 지정을 할 수 없습니다. (계약 전 위치 확인 요망)
- 추가선택품목에 따라 배선기구 / 조명기구 / 분전함 등의 위치 및 수량, 사양 등은 변경 또는 미설치 될 수 있습니다.
- 추가선택품목 계약은 아파트 분양 체결 시 발코니 확장 미선택 시 시공 및 공간부족 등의 사유로 추가 선택이 불가할 수 있으며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추가 선택품목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구 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비 고
계약금	하나은행	2019-2434-596937	현대건설(주)	
중도금 / 잔금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개별 계좌부여(가상계좌)			

- ※ 계약금은 지정된 상기 계좌로 납부하여야 하며, 중도금, 잔금은 계약 체결 시 세대별로 부여되는 가상계좌로 납부하여야 합니다.(타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7자리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1203호 홍길동 : 1011203홍길동 / 102동 501호 홍길순 : 1020501홍길순)
- ※ 중도금, 잔금 납부계좌는 가상계좌로 부여되며, 모계좌 [하나은행, 201-910027-16804 현대건설(주)외]로 관리됩니다.
- ※ 지정된 추가 선택품목(옵션)의 중도금 및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 상기 선택품목(옵션) 대금 납부계좌 및 세대별 가상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선택품목(옵션) 대금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 추가 선택품목의 계약금 계좌와 분양대금 계좌는 상이하므로 입금 시 유의바랍니다.
- ※ 추가 선택품목 공급금액에는 취득세 등 제세공과금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입주 시 개별 납부)
-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등 수준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 마이너스 옵션(기본선택 품목) 적용 품목 및 범위

구 분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본제공 품목
① 바닥재	마루, 타일, 걸레받이, 굽도리, 현관바닥재, 현관디딤판, 발코니 바닥타일(시멘트 몰탈 포함)	바닥난방배관+시멘트몰탈(난방배관 시공부위만 해당), 발코니 우수선홈통, 수공간 바닥방수(보호몰탈 시공)
② 벽	벽지(초배지 포함), 벽체마감 일체(타일 등), 아트월(타일, 판넬, 도장 등 일체 포함)	석고보드 마감, 단열공사, 조적공사, 미장공사, 발코니벽 도장, GAS 배관
③ 천장	천장지(초배지 포함), 등박스(우물천장 포함), 반자동림(몰딩 포함)	천장을 위 석고보드, 콘크리트 먼처리(해당 부위)
④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직부등, 매입등, 센서등 일체)	배관 / 배선, 배선기구류(스위치 및 콘센트)
⑤ 욕실	위생기구(양변기, 세면기, 욕조, 비데 등), 수전류, 액세서리류, 샤워부스, 욕실장, 욕실타일, 욕실선반, 욕실 인테리어(젠다이, 스위치, 콘센트 등 마감일체)	조적, 방수, 미장, 전기설비 배관 / 배선 설비배관(급·배수 등 매립배관), 배기덕트욕실천장 (배기팬 포함)
⑥ 창호	목창호(문짝, 문틀, 상부덧판, 문선 등 일체) 및 욕실문, 창호철물 일체(도어록, 경첩 포함), 디지털도어록, 금속도어	각실 내부 PL창호, 세대현관 방화문 및 도어록

※ 상기 품목은 주택형(타입)별로 상이하며, 상기 명시되지 않은 기본선택품목 등은 견본주택 내 기본설치 품목에 준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60A	60B	69	84
기본선택 (마이너스 옵션 금액)	22,141,000	21,956,000	25,172,000	30,241,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세대는 시공상의 문제로 발코니 확장공사 및 별도계약 품목 시공 신청이 불가합니다.(마이너스 옵션 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오니 신청시 유의하시기 바람)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발코니 오수 드레인 설치가 불가하므로 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 배선 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설계 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단, 상기 마이너스 옵션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하여야 함)
-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점 감안하여 품목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6조 규정에 따른 최초 입주가능일(입주지정일)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 옵션)의 시공 및 설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건설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건축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마이너스 옵션부분 공사로 기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기타 공사시설물, 건물의 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품목을 훼손 시에는 원상복구 및 배상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기시공된 통신기기, 난방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공사 과정에서 탈부착 됨으로 인하여 초기 세팅 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가능일(입주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공사를 완료 후 정상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또한 사업주체가 시공한 부분의 정상작동 여부에 대하여 사업주체 측과 입주자가 공동으로 확인하고 확인서를 작성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사업주체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용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가변식의 칸막이 제거(변경)는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은 별도 동을 지정하지 않으니, 마이너스 옵션 선택을 희망하실 경우는 당첨된 동·호수에 마이너스 옵션이 적용된 분양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분양 이후 미계약 세대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판단에 따라 마이너스 옵션세대로 지정하여 사용승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마감두께를 감안하여 벽체, 창호 및 바닥에는 틈새나 여유 공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기둥 및 벽체에는 마감을 위해 별도의 마감(건출, 도장) 처리가 삭제될 수 있습니다.
- ※ 주방기구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렌지후드가 설치되지 않으며, 입주자가 설치할 렌지후드는 소방법에 의거 자동식 소화기가 포함된 제품이어야 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한 계약자의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잔금에서 공제됩니다.
-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 시 세대내 서비스 제공품목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계약세대는 계약 시 기본선택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관련 확인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9 기타 계약자 안내

■ **입주자 사전방문 안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7호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공사 및 위생기구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일전 입주개시 약 1~2개월 전에 입주자 사전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방문 예정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4년 08월 예정 (향후 일정 등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추후 개별 통보키로 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 선납할인은 적용되지 않으며, 입주지정기간에는 연체료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 입주 시 단지 관리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리비 예치금을 부과합니다.
- 입주지정기간이 경과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익일부터 관리비 등이 부과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암반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에 따른 이익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발생하는 재산세 등 각종 제세공과금에 대해서는 입주 및 잔금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유무에 관계없이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또한, 계약자 불이행으로 인해 사업주체가 입은 손해는 계약자가 배상합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 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합니다.)
-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일 2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통보하고, 실입주 1개월 전에 실입주일을 각각 통보 합니다. 또한 입주지정기간은 500세대 이상 단지는 최소 60일 이상, 500세대 미만 단지는 45일 이상 제공 합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에 의거 적용됩니다.**

■ **부대복리시설**

- 지하주차장, 기계실, 전기/발전기실, 관리사무소, 북카페, 실내골프연습장, 작은도서관, 휘트니스 등

■ **친환경 주택의 성능 수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시합니다.
- 친환경주택의성능수준(의무사항적용여부)

구 분		적용여부	사양, 성능, 설치위치, 설치개수
의무사항 이행여부	고기밀 창호	적용	외기에 직접 면한 창의 기밀성능은 KS F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방법에 의해 그 성능이 2등급 이상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고효율기자재	적용	가정용보일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이상 제품을 사용 전동기(단, 0.7kW 이하 전동기, 소방 및 제연송풍기용 전동기는 제외)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효율관리기자재 운용규정」에 따른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 또는 최저소비효율기준을 만족하는 제품을 사용 난방, 급탕 및 급수펌프는 고효율에너지기자재로 인증받은 제품을 사용하거나 그 평균 효율이 KS 규격에서 정해진 기준 효율의 1.12배 이상의 제품을 사용
	대기전력차단장치	적용	거실, 침실, 주방에는 대기전력자동차단콘센트 또는 대기전력차단스위치를 각 개소에 1개 이상 설치
	일괄소등스위치	적용	세대 내에는 일괄소등스위치를 설치 (다만, 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고효율 조명기구	적용	세대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산업통상자원부 고시「효율관리기자재의 운영에 관한 규정」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는 고효율조명기구 또는 LED 조명기구를 사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단지 내의 공용화장실에는 화장실의 사용여부에 따라 자동으로 점멸되는 스위치를 설치
	실별온도조절장치	적용	세대 내에는 각 실별난방온도를 조절할 수 있는 온도조절장치를 설치
	절수설비	적용	세대 내에 설치되는 수전류는 「수도법」제15조 및 「수도법시행규칙」 제6조에 따른 절수형 설비로 설치

「주택건설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64조 및 「주택법」 제39조 따른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 및 공동주택성능에 대한 등급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광교 C6블록 주상복합	인증번호	G-SEED-P-2021-0302-7
건축주	정원산업개발(주)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준공(예정)일	2024년 7월 14일	유효기간	2023.3.31. ~ 사용승인일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리동 광교역지개발지구 C6블록	[인증 등급]	
층 수	지하 7층, 지상 20층 / 211세대		
면적	81,864.660㎡	인증등급	우량등급(복합건축물(공동주택·일반(비주거)))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인증기준	녹색건축 인증기준
설계자	㈜디에이그roup연지니아종합건축사사무소	국토교통부고시	제2016-341호
		환경부고시	제2016-130호

위 건축물은 「녹색건축을 조성 지원법」 제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 등급)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분야별평가]

종합등급 ★★☆☆

2021년 3월 31일

kpc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KOREA PRODUCTIVITY CENTER QUALITY ASSURANCE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6. 7. 27.>

- 공동주택명: 광교 C6블록 주상복합
- 신청자: 정원산업개발(주)
- 대지위치: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리동 광교역지개발지구 C6블록
- 성능등급

가. 소를 관련 등급		다. 환경 관련 등급	
1. 고품질건축 자단성능	★★★★	20. 단열능능능능능능능능	★★★★
2. 고품질건축 자단성능	★★★★	21. 자연친화적 녹지율	★
3. 고품질건축 자단성능	★★	22. 생태친화적	★
4. 세대 간 관계적의 차용성능	★★	23. 비오름 조성	해당없음
5. 수질(음/도로, 황도)에 대한 실내·외 수질도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방출 저용의 적용	★★
6. 화장실 급배수 소음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해당없음
		26. 단위세대 환기성능 확보	★★
		27. 저온도로보정장치 설치 수준	★★★★

나. 구조 관련 등급		라. 생활환경 관련 등급	
1. 내구성	★	1. 단차, 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기밀성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수리용이성 선율부분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와 직결성	★★★★
4. 수리용이성 공용부분	★★	4. 생활편의시설의 밀집성	★★★★
		5. 근린형상의 환경공간의 계획	★★★★
		6. 운동·휴식·문화·관광 시설 및 편의시설 제공	★★★★
		7. 사용자 편의성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동공간의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음향차단 성능 향상시스템	★★★★
		14. 광범위한 쉼터 조성	★★★★

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계단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노면	★
6. 피난설비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3월 31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210mm×297mm(배정지 120g/㎡)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 6호 서식)<개정 2017.1.20>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광교 C6블록 주상복합(주거용)	인증번호	21-주-제-1-0176
준공연도	20240714	평가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주소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아리동 광교역지개발지구 C6블록	인증기관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층 수	지하 7층, 지상 20층 (14개층)	유효기간	사용승인 또는 사용공시 종료일
면적	81,864.66(㎡)	[인증 등급]	
건축물의 주된 용도	공동주택		
설계자	(주)디에이그roup연지니아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등급	1+등급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요구량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비율
에너지 제로에너지 건축물	0	0	1+	48	30.3
에너지 저소비율 건축물	0~100	100	1	56	
에너지 다소비율 건축물	100~200	200	2	64	
	200~300	300	3	72	
	300~400	400	4		
	400~500	500	5		

에너지 소비도열 평가결과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1차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kWh/㎡·년)	단위면적당 CO ₂ 배출량 (kg/㎡·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41.3	54.5	40.6	9.1
급탕	30.7	42.1	31.2	7.6
조명	18.0	6.9	19.0	3.2
환기		2.1	5.8	1.0
합계	85.0	105.6	95.6	20.3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이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비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오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 소비량 : (에너지 소비량에 연료의 차액, 가열, 운송, 변환, 급탕 공급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₂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 연료의 차액, 가열, 운송, 변환, 급탕 공급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가) : 설치된 [V]로 피난거리가 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평균 10%의 편차로 인증을 받아야 하며, 최종인증에 따른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비량은 유효도에 따른 보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 11조 제 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1+등급) : 건축물용 인증당첨자에게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

2021년 03월 19일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 각 인증별 등급의 항목별 점수와 평가결과는 현장여건 및 본인증 심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각 인증에 제시된 시험성적서는 단순 샘플자료이며, 현장여건 및 본시공, 인증기관 협의 등에 따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분양원가 공개

- 「주택법」 제57조제1항 및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에 따라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분양가격을 공시항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개합니다.
- 아래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으며, 추후라도 이는 분정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공동주택의 단위세대 내부 마감재 중 일부를 선정하여 제시한 마이너스옵션 품목에 대하여 계약자가 세대별 일괄 신청시에 해당시설 및 비용을 제외한 후 공급받을 수 있으며, 아래 제시된 마감재품목과 금액으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단,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선택품목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절차」중 동·호를 배정한 당첨자선정 발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단위 : 원)

항 목	공 종	금 액	항 목	공 종	금 액	항 목	공 종	금 액				
택지비	택지공급가격	58,033,017,000	공사비	건축	철근콘크리트공사	11,258,085,000	기계 설비	위생기구설비공사	769,953,000			
	기간이자	804,719,203			용접공사	-		공조설비공사	-			
	필요적 경비	3,030,196,674			조적공사	667,741,000		난방설비공사	473,817,000			
	그 밖의 비용	20,866,734,123			미장공사	2,196,127,000		가스설비공사	118,454,000			
공사비	토목	토공사			1,467,878,000	단열공사		370,967,000	자동제어 설비공사	177,682,000		
		흙막이공사			-	방수·방습공사		747,871,000	특수설비공사	236,909,000		
		비탈면보호공사			-	목공사	1,292,451,000	그 밖의 공종	전기설비공사	2,923,066,000		
		옹벽공사			-	가구공사	3,736,385,000		정보통신공사	1,515,664,000		
		석축공사			-	금속공사	258,193,000		소방설비공사	1,605,813,000		
		우수·오수공사			305,604,000	지붕 및 흙통공사	262,645,000		승강기공사	730,766,000		
		공동구공사			-	창호공사	1,751,951,000	그 밖의 공사비	일반관리비	2,205,404,000		
		지하저수조 및 급수공사			-	유리공사	337,338,000		이윤	992,432,000		
		도로포장공사			327,931,000	타일공사	1,328,064,000		간접비	설계비	851,529,000	
		교통안전 시설물공사			-	돌공사	884,386,000			감리비	313,721,000	
		정화조 시설공사			-	도장공사	384,322,000			일반분양시설경비	950,127,608	
		조경공사			1,338,612,000	도배공사	457,032,000	분담금 및 부담금		-		
		부대시설공사			-	수장공사	744,903,000	보상비		-		
		건축			건축	공통가설공사	616,325,000	주방용가구공사		1,074,322,000	그 밖의 사업비성 경비	1,229,528,438
						가시설물공사	606,384,000	그 밖의 건축공사		1,234,580,000		그 밖의 비용
지정 및 기초공사	774,617,000		급수설비공사	1,184,543,000		합 계	179,838,900,000					
철골공사	-		급탕설비공사	1,125,316,000								
				오수·배수설비공사	473,817,000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임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01292021-104-0002800호	143,871,120,000원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로부터 건물소유권 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검사 포함)까지

- 본 아파트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아파트입니다.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파산 등으로 보증사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공사진행 정보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이하 본조에서 “보증회사”라 칭함)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 보증채무의 내용(보증약관 제1조)
 -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상복합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건축주 또는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주상복합주택】 주택 이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건축물에 건축하는 경우의 주택을 말하며, 이 경우 그 주택과 함께 동일건축물에 건축되는 일반에게 분양하는 복리시설(주택 이외의 시설중 오피스텔을 제외한 시설을 말합니다. 이하 “복리시설”이라 함) 및 오피스텔을 포함합니다.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또는 건축허가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보증약관 제2조)
 - ④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 허위계약, 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유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보증서발급(주택의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를 말한다) 이전에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 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 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0.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1. 보증사고 전에 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해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 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주택분양보증약관」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4.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홈오토, 발코니 새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5.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과 도급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건축주(공동사업주체)·시공자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1. 사용승인일(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기재된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 보증사고(보증약관 제4조)
 - ① “보증사고”라 함은 보증기간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 파산, 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한다. 이하 같다)보다 25퍼센트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공정률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 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수상복합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보증서 발급일을 말한다)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승인(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사용승인(동별사용검사)을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접수일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공급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업주체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분양자(매도인)는 이 계약 체결과 동시에 수분양자(매수인)에 대한 분양대금채권을 주택도시보증공사에게 양도하고 수분양자는 이를 이익없이 승낙하기로 합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공동주택 사업장의 공사 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상세내용은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문의 바랍니다. ☎ 1566-9009)

■ 감리회사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부가가치세 포함>

구 분	회사명	감리금액	비고
건축, 기계, 토목, 구조공사	주식회사 디에이그룹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식회사 대양씨앤이	1,254,000,000원	
전기, 통신	주식회사 나라기술단	572,000,000원	
소 방	주식회사 지케이엔지니어링	379,500,000원	

※ 감리금액은 감리회사와의 계약변경 등으로 증감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구 분	사업주체		시공사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	시행위탁자	
상 호	주식회사 무궁화신탁	정원산업개발 주식회사	현대건설 주식회사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34, 22층 (역삼동, 포스코 P&S타워)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신수로 767, 에이동 237호 (동천동, 분당수지 U-TOWER)	서울특별시 종로구 울곡로 75, 현대빌딩
등록번호	110111-2867418	134511-0428513	110111-0007909

10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하고 숙지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본 아파트는 실제로 입주하실 분을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 내용 변조 등의 주택공급 질서 교란행위시 관련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사업계획(변경)승인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타사 또는 시공사 분양아파트의 마감사양, 설치 부대복리시설 및 조경과 본 아파트를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건축도서에서 제시한 사항 외에 추가적인 마감사양 및 부대복리시설, 조경의 설치 또는 교체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 홈페이지, 카탈로그 및 홍보물, 견본주택 내 모형 등의 사진, 일러스트(CG, 그림), 위치도, 조감도, 투시도, 단지배치도, 조경 및 부대시설,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평면도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관계기관 심의 및 평가결과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 공사 중 천재지변, 문화재 발견, 노동조합의 파업·태업 및 전염병 발생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 지연 보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관련 및 교육청이나 인허가청 개인정보 요구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당첨 이후 주소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변경 내용을 사업주체에 즉시 유선 및 서면(주민등록표등본 포함)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체결 후 해약하게 되는 경우 공급계약서 약관에 따라 위약금을 공제하고, 별도의 구상금 청구 및 손해배상청구를 받을 수 있으니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단지 내에 건립되는 공유시설물 및 대지는 공동으로 사용하고, 아파트 계약면적 외 판매, 근린생활시설 등 비주거부분에 대하여 별도의 권리 주장이 불가합니다.
- 주택법 제54조 규정에 의거 견본주택에 사용된 마감자재 목록표는 견본주택에 열람 가능토록 비치되어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공급가격은 각 세대의 주택형별, 층별 등의 다양한 조건들을 고려하여 책정한 금액으로 주택형별 분양금액의 상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도로, 소음, 조망, 일조, 진입로 등 주변현황 및 현장여건, 주변개발계획,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발생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세대내부 불박이장류(읍선포함), 욕실장, 욕실거울 후면 등 배면 및 접해져 있는 벽, 바닥, 천장등의 최종 마감자재(지정마루판, 벽지 등)는 설치되지 않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와 관련된 분양 홍보물상 조감도 및 견본주택의 모형도 등의 아파트 입면은 실시공시 특화계획에 따라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수분양자는 계약 시 이를 인지하고 청약신청 및 계약체결을 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시공사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가 아닌 경우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고 설계 및 공사 진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 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이전 등기시 대지지분은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구조 및 상품개선을 위한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합리적인 시공을 위하여 관련법령 내 적합한 세대 내·외부 설계변경 등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본 아파트의 면적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입주지정기간(공사도중) 전 세대내 무단출입 및 세대내부의 임의적인 촬영을 금지하며, 무단 촬영물의 유포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 피해 발생시 손해 배상의 책임을 져야 합니다.
- 대지경계 및 면적은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최종 측량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시 대지경계 및 지적 확정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고문 및 관련 홍보물에 표시된 주택 면적의 표시는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하였으며, 연면적과 전체 계약면적과는 소수점 이하에서 약간의 오차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주택법」제15조제4항에 의거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간주하며 사업주체가 경미한 사항의 변경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측벽 로고의 위치, 크기, 개소수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 건본주택에 전시된 모형도 및 각종 분양 홍보물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 색상, 저층부 마감, 옥탑지붕 형태, 지붕장식물, 식재 및 조경 시설물, 단지 내 시설물 등의 디자인 / 마감사양, 동선체계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측량결과 및 각종 평가심의의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입주자의 동의 없이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규 등에 의합니다.
- 본 공고상에 명시한 내용과 관계법령의 규정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릅니다.
-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공부정리 절차 등으로 지연될 수 있습니다.
(특히 대지의 이전등기는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건물등기와 대지권 등기를 별도로 이행하여야 함)
- 공동주택 세대별 대지지분은 공동주택 총 대지지분을 주택형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배분하였으며, 세대당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인허가과정,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소수점 이하 단수정리에 따라 실제 등기시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과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증감이 있을 때에는 공급가격에 의해 계산하여 소유권 이전등기 시까지 상호 정산하기로 하되, 소수점 이하 면적변동 및 이로 인한 지분 변동에 대해서는 상호 정산하지 않기로 합니다.
- 지정일(입주자사전점검일 등의 지정일)외에는 안전사고 등의 예방을 위하여 현장에 출입을 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입주 후 내부 구조벽체 제거 및 변경은 불가하며, 불법 구조 변경 시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됩니다.
- 현장 상황에 따라 추후 단지명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에게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인테리어 시공, 부동산중개업자의 영업행위 등)는 사업주체와는 무관한 사항이므로, 청약 및 계약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모형, 단위세대 모형,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단지 외부 실시계획인가(공공공지, 경관녹지, 기부채납도로) 협의에 의해 일부 포장레벨, 지반경사도, 옹벽, 조경계획 등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명칭, 단지 내 명칭 및 동 번호는 관계기관의 심의결과 등에 의하여 입주시 홍보 및 공급시의 명칭(본 광고의 명칭 등)과 상이할 수 있으며, 추후 변경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해 사업에 사용된 사업주체의 브랜드 등은 향후 회사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 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분양계약 체결 및 분양권 전매 시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자 부담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결정에 따르며, 모든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본 아파트는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내진설계가 되어 있으며, 동 기준에 의한 내진능력은 수정 메르칼리 진도 등급 VII-0.204g에 해당합니다.

■ 홍보물 관련 유의사항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건본주택을 확인하시어 청약 및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홍보물(카탈로그, 안내문 등) 등 홍보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 될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확장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일부세대 비확장 선택시 외벽면 창호가 설치되지 않고, Hammatun 난간이 설치되어 외부 미관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개별 확장으로 인하여 추후 창호 색상(유리 및 프레임)이 상이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건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건본주택 또는 사이버 건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갭” 및 “시공자”는 준공 후 입주자의 원활한 입주 업무지원, 신속한 하자보수 및 사후관리를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일부를 일정기간(입주업무는 입주 후 최대 5개월, 하자보수 업무는 입주 후 최대 27개월)동안 입주지원센터(가칭) 및 현장A/S센터(가칭)로 사용하며, 시공자에게 이에 따라 발생하는 시설사용에 대한 일체비용(임대료 등) 및 시설이전을 요구하지 않기로 하며, 관련 민원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 각종 광고 및 홍보물(건본주택, 카탈로그, 리플렛, 전단, 공급안내, 홈페이지, 신문광고 등) 등에 표시된 주변환경, 영업계획, 교통여건 및 각종시설 (도로, 공공청사, 학교, 지하철, 차도, 업무시설 등)의 조성계획(예정사항)은 각 시행주체가 계획, 추진예정 중인 사항을 표시한 것으로 시행주체 및 관계기관의 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설계 일반

※ 다음과 같은 설계관련 주요사항을 숙지하기 바라며, 추후 아래 사항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하기 사항에 따라 일조·조망·사생활 침해, 소음·빛공해·분진·냄새·진동 발생 등 환경권을 침해 받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지하주차장 기계실 / 제연FAN / 우수조 / 송풍기 / 주방배기 및 하부 상업시설의 배기시설 / 공조실 / 냉각탑 등에 인접한 세대의 소음, 냄새, 진동, 해충 등의 생활권 침해 및 돌출물 / 시설물(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 등, 위성안테나, 태양집광판, 피뢰침 등) 등으로 인한 일조, 빛공해, 조망간섭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 될 수 있습니다.

- 4층 포디엄 상부(3층 상업시설 지붕상부)에 아파트 커뮤니티시설의 에어컨 실외기가 설치되어 이와 인접한 저층부 세대에 소음, 진동, 냄새, 미관저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업시설 주방 배기를 위한 배기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일부동의 계단실 및 엘리베이터홀에 설치되는 창이 개폐여부 및 방식은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차장 진입을 위한 램프의 마감재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및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설비관련시설 등의 위치 및 면적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계약면적이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는 일반상업지역에 건립되는 주상복합 건축물로 건축법상 일조권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세대별, 위치별로 일조권 및 조망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의 위치, 층, 향에 따라 일조량 및 조망에 차이가 날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의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합니다.
- 본 단지는 「건축법」을 준수하였으며, 단지 내·외 인접한 건물들과 건물 입면의 입면 장식, 각종 시설물, 조경 등으로 인하여 일조권 및 조망 등의 환경권 침해가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상이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관하여 시행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재활용집합창고, 기계전기실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실외기 및 환기시설(부대시설용), 공조실 및 냉각탑(상업 시설용)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위치에 따라 일부 저층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시설물의 위치는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기계 / 전기실, 발전기실, 급배기구, 실외기실(커뮤니티), 공조실 및 냉각탑(상업시설), 쓰레기집적소 인접실에는 냄새, 소음 및 해충 등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단지 배치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및 세대 상호간의 향·층 및 조경(식재, 시설물)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권이 침해당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 사실을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세대내의 위치에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김치냉장고, 냉장고, 세탁기 등) 및 가구 등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유의바라며, 청약신청 및 입주 시 이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지하주차장 이용 시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차량이 주차될 수 있어 불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 및 철골 철근 콘크리트 복합구조입니다.
- 동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각종 인증과 관련하여 인증서 및 관련도면에 첨부된 자재 및 공법은 실 시공시 현장 여건 및 자재수급 여부에 따라 동등 수준의 자재 및 공법으로 대체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는 공사 중에 고품질 시공을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활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해당 세대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견본주택 내 건립세대, 주민공동시설,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에 표현된 디스플레이용품 등은 분양가에 포함되지 않으며 단지 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 내용은 주택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주거전용면적은 확장형을 위한 합리적인 평면설계를 위하여 법정 발코니 초과면적이 일부 산입되어 있으므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주거공용공간, 지하주차장,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조경공간, 단지 내·외 도로(인도, 차도, 자전거도로, 비상차량 동선 등) 등은 실시공시 대관 인·허가 과정이나, 구조 및 성능 개선을 위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면적과 계획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각 세대의 공용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면적은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었으며, 면적 계산상 소수점 다섯째 이하 자리 처리방식 차이로 인해 전체 연면적과 세대별 계약면적의 합과는 오차가 생길 수 있음. 추후 등기를 위해 면적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건립안과 설계도서가 상이한 점이 발생하는 경우 견본주택 건립안으로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단위세대 및 기타 설계변경사항이 관련 법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인 경우 계약자의 동의를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사업주체가 설계변경 인·허가를 진행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출입구, 부대복리시설, 상업시설, 외부장식물, 식재 등 단지 내 시설물 등에 의해 특정세대의 경우 일조권, 조망권 및 환경권 등이 침해 될 수 있으며, 야간조명 효과 등에 의해 눈부심 현상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 세대의 경우 포디엄 상부의 동 출입구 형태에 따라 동 현관 및 부대복리시설 출입구 등에 따른 시각적 간섭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탈로그 등)에 표시된 컴퓨터그래픽 및 마감재(규격, 재질, 디자인, 색상 등), 분양사업장 내 전시모형(건축물, 조경, 시설물, 단위실 등)은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이며 현장 여건 및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허가관청 및 국가시책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당 공급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른 공부정리 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각종 홍보, 인쇄물(카다로그 등), 전시모형에 표현된 지하 연결보행통로(예정)와 연결되는 광고중앙역, 버스환승센터, 경기도청사(경기도 융합타운)는 개략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 표현한 자료이며, 실제와 이격거리, 위치 등이 다를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개선을 위하여 판매시설 및 근린생활시설과 아파트의 외관디자인(입면, 옥탑, 측벽, 몰딩, 창틀, 필로티, 공용홀, 동출입구, 캐노피, 지하출입구 등) 및 외부 시설물(DA, 자전거보관소, 쓰레기집적소, 조경, 실외기보관소 등)의 형태, 마감재 및 색상은 심의 및 법규, 디자인 개선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계획된 단지 특성상, 본 단지에는 별도의 경비실이 계획되어 있지 않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의 주차구획과 지하7층 기계전기실 등의 배치로 인해 일부동 주변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2개층이나 일부동 주변은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1개층으로 계획되어 주차대수가 크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 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이점을 반드시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계획상 102동 1,2호라인과 104동 1,2호 라인의 지하7층 엘리베이터 홀은 주차장 레벨보다 낮게 계획이 되어 이용에 불편함이 있을수 있으니, 이점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세대가 속한 동의 위치, 층, 향에 따라 일조량에 차이가 날 수 있고, 일부 세대는 하루 종일 일조가 되지 않는 영구음영 세대가 생길 수 있는 점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 세대 옥실의 일부 벽체는 본 공사시 사용성 및 품질확보, 하자예방 등을 위하여 벽체의 재료가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학교 및 학군 관련 사항

- 본 아파트 부지 인근 융합(초10)에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사전절차가 진행중이며,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를 통과한 뒤 학교설립이 확정됩니다.
- 초등학교 통학구역은 산의초등학교입니다.
- 중학교는 광고중학군(광고중, 이의중, 연무중, 수원다산중, 광고호수중)에 속하며 배정방법은「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68조」에 의거 학군 내 지망별 컴퓨터 추첨에 의하여 배정되므로 거주지 인근 중학교로의 배정(입학)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고등학교는 관내 기존학교에 배치가능하며 수원관내 일반고(자율형 공립고 포함)는 경기도교육청 고등학교 입학전형에 의거 평준화 지역 배정 방법을 따릅니다.
- 학생배정계획은 향후 입주시기 및 학생수 등을 감안하여 해당관청에서 결정하는 사항이며, 사업추진계획의 변동 및 관할기관의 정책 변화에 따라 분양 당시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니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청 등 해당 관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변현황 / 단지배치

- 단지 북동측의 도시계획시설(지하차도 등), 공공청사부지, 가로수 및 남동측 구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지(업무시설부지) 등 사업부지 외의 인접 개발계획은 사업주체의 시공책임이 아니며, 규모, 높이, 형태, 세부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가 지연 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부지 부지 북서측과 남서측에는 도로가 위치하고 있고, 부지 북동측의 도시계획도로(지하차도 등)와 남동측의 구 경기신용보증재단부지 및 미디어센터 등은 관계기관의 계획에 의해 조성 예정입니다. 현재 설치되어 있거나, 향후 예정되어 있는 도시계획도로 및 인접 건물 및 시설 등으로 인해 일부 일조, 조망 등의 제한, 소음, 분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건물 특성상 별도의 방음벽을 설치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해 수분양자는 반드시 확인 후에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부지 북동측에 인접하여 개발예정인 도시계획시설(지하차도 등)로 인해 소음, 진동, 분진, 미관저해, 조망불리 등 환경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시설의 세부 개발계획은 관련기관의 사업계획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북동측, 단지 외 시설인 지하차도 상부의 구조물(도시계획시설)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진동, 냄새, 매연, 미관저해 등의 환경권 침해를 받을수 있으며 해당시설물은 현재 기본계획 진행중이며,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라 위치, 높이, 길이, 마감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지하3층에 광고중앙역(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연결보행통로가 설치 예정이며, 향후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하여 위치, 크기, 너비, 높이, 레벨, 마감, 설치형태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지하2층에 광고중앙역 환승센터(버스)와 연결되는 연결보행통로가 설치 예정이며, 향후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하여 위치, 크기, 너비, 높이, 레벨, 마감, 설치형태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건물은 지하1층에 경기도 융합타운과 연결되는 연결보행통로가 설치 예정이며, 향후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하여 위치, 크기, 너비, 높이, 레벨, 마감, 설치형태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지하3층에 연결되는 지하철 연결공사와 관련하여 기본계획, 설계나 인·허가과정에서 위치나 설치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부에 설치되는 공개공지는 공공에 개방되는 시설로서 입주자 임의로 헨스를 설치하여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할 수 없으며,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 세부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상위법 및 지구단위계획에 의해 정해진 공공보행통로는 단지내부 시설이지만, 외부인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인·허가 협의 등에 따라 디자인, 범위 등 세부계획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 설치되는 미술작품의 위치 및 형상은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미술작품 설치로 인해 일부 호실의 조망권, 일조권,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이는 입주자의 개인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
- 일부 단지내 보도는 상위법에서 정한 공공보행통로로 입주민 외에 외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며, 입주 후 외부인의 보도이용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배치계획상 배치 및 층별, 향, 동, 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등의 침해, 진동, 통풍, 소음, 악취 등으로 인한 피해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사업준공 이전 및 입주 후 인접지역의 개발로 인하여 소음, 분진, 생활여건시설미비, 공사차량통행 등에 따른 불편이 따를 수 있으며, 인접세대는 일조권, 조망권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므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주변 도로에 인접한 주동의 일부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대지주위의 도로에 대한 사항은 도시계획상 상위계획 및 최종측량 성과도에 따라 도로폭, 경사도, 레벨계획, 바닥마감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와 단지 주출입구에는 자동차 도로가 접하여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니 현장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 지역 개발 등으로 개설되는 도로는 당 사업과는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 모형도, 단지 배치도 등에 표현된 주변 도로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본 단지에 인접한 공공청사부지, 업무시설부지는 당사업과 무관하며, 조감도, 단지모형도, 단지 등에 표현된 내용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로만 활용 바랍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대지주위 도로 폭, 단지 내 도로선형, 시설물의 위치, 조경(수목, 수경시설, 조경시설, 포장 등), 단지 레벨차에 따른 옹벽의 형태 및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른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향후 개발 예정인 북동측 도시계획시설(지하차도 등) 및 남동측의 구 경기신용보증재단 부지 등의 공사중 그리고 공사 완료 후 소음, 매연, 먼지, 진동 등 모든 민원에 대하여, 향후 관할 관청 등으로 여 떠한 민원도 제기할 수 없으므로 사전에 충분히 검토한 후에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주변 도로, 지하철, 근린공원, 소공원, 통행로 인접 등으로 인한 소음, 진동, 분진, 빛공해,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배치 상 쓰레기 분리수거함, 재활용 창고, 급배기시설(환기구 등), 주민공동시설 에어컨 실외기, 판매/근린생활시설 냉각탑 및 공조실, 주방배기구 인접으로 인한 소음, 진동, 냄새 및 해충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변 건축물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옹벽·석축, 단지 내 휴게공간, 드라이에어리어(D/A), 선큰, 4층 연결브릿지, 커뮤니티시설, 커뮤니티시설의 실외기,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의 공조실, 냉각탑 등의 설치로 일조·조망·사생활권 침해, 소음 발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외부의 인접대지 레벨은 추후 변동될 수 있으며, 단지 경계부에 설치되는 경사면/계단/램프/옹벽 등은 종류 및 위치, 노출범위(높이, 길이), 형태, 마감사양, 디자인 등이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전기 기반시설인 한전패드스위치가 설치될 예정이며, 설치위치, 개소 등 세부계획은 관련기관 협의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한전패드스위치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조망, 미관저해 등 생활권 침해를 받을 수 있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주동 / 공용부

- 판매/근린생활시설 주방 배기 덕트 및 환기시설이 세대 인근에 설치될 수 있으며, 소음, 냄새, 진동 발생 등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명칭, 외부색채 및 마감재와 조경 계획, 외부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경관/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붕층 및 옥탑층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용 조명, 위성안테나, 피뢰침, 급배기 환, 태양광 집광판, 소화수조 및 기타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시설물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엘리베이터와 인접된 세대에는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으로 인한 영향을 받을 수 있으며,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동의 엘리베이터 홀은 직접 채광 및 환기가 제한됨을 사전 인지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로비 평·입면 계획(지하층 로비/복도 포함), 코아 평면 및 창호 형태와 설치계획 등은 상세계획에 따라 공사 중 설계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주동 1층 외부에 자전거 보관소가 설치되며 향후 위치 및 설치 대수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주차장은 지하6층~지하7층 위치하며, 상업시설(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주차장은 지하4층~지하6층에 위치합니다. 주차계획상 주동주출입구에서 거리가 먼 곳에 주차하여 이용할 수 있을 수 있으며, 각 동별 인접한 주차대수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커뮤니티시설,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등과 인접한 일부 세대는 프라이버시 확보에 불리하고, 소음, 조망, 일조, 진동, 냄새 측면에서 불리할 수 있으니 각 시설의 위치를 명확히 인지하고 계약체결하시기 바랍니다. 각 시설의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휘트니스, 골프연습장 : 101동 지하3층/관리사무소 : 104동 지상3층/어린이도서관, 북카페 : 103동 후면 지상4층)
- 각 동의 저층부 및 고층부 세대는 가로등 및 야간조명, 상업시설 조명, 포디엄 상부 조경조명 등의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커뮤니티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사용에 대하여 각 동별 사용 시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이의 배치 및 사용상에 대해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주거시설의 위치와 주동 배치계획 상 각 동별 지상, 지하 동선거리가 상이하고, 또한 같은 이유로 부득이하게 각 동별 주차장에서 엘리베이터 출까지의 거리가 상이하고, 주차대수가 고르게 분포되지 못하여 주차장이용에 불편할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 동의 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보안·안전상의 문제로 경비실(이동식 또는 고정식)이 추가 될 수 있으며 위치에 따라 저층부 세대의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종 인쇄물 및 조감도, 투시도, 견본주택의 모형 등에 표현된 아파트 입면에는 실시공시 줄눈 또는 문양이 형성되는 등 세부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경관조명, 공용조명, 단지 홍보용 사인물, 조경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옥탑 및 측벽에는 조형물 및 경관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어 최상층 세대의 조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운영, 유지, 보수 등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마감재, 색채계획 및 경관조명 계획은 건축(경관)심의에 따라 계획되었으며, 추후 관계 인허가청의 협의과정 등에서 마감재, 색채 및 경관조명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민공동시설,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 인접세대는 시설 이용에 의한 소음발생 및 사생활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재활용집합창고, 분리수거대, 자전거보관소 위치 및 설치규모는 공사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트렌치 시공 시 시공부위의 주차구획은 트렌치폭을 포함하며, 트렌치가 배면, 측면에 시공될 시에는 주차라인 마킹 시공이 제외됩니다.
- 지하주차장 주차대수는 대지형태, 주동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대수이므로 각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하주차장 상부에는 각종 배선, 배관, 환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환기를 위한 환기구가 일부 동의 전면, 측면, 후면에 설치되어 있어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차량출입구에는 지하주차장 출입램프가 설치되며, 또한 주차 차단기의 위치는 현장상황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은 일반주차, 장애인용주차, 확장형주차, 경형주차, 평형주차, 전기차충전면으로 구성되어있으며, 각 용도별 주차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하니 이점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 옥상은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출입이 금지되고, 출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사업주체와 시공사에서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옥상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는 출입문은 보안을 위하여 출입이 통제될 수 있습니다.
- 주차관리실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조경 및 토목공사는 향후 보행통로, 가로수, 도로, 시설물, 포장 등의 설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저층부세대는 포디엄 상부 단지 입주민의 보행에 의해 생활소음 및 사생활권 등의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이 인접한 동의 시설을 이용하는 이용객에 의해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동 및 부대복리시설과 상업시설의 색채 및 외부마감재, 옥외시설물은 향후 상위 지침변경 및 인허가 협의(경미한 변경신고)과정 중 입주자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사업주체에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대지주위의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사항은 최종 측량 성과도에 따라 결정되므로 도로 폭 등의 사항이 다소 변경되어질 수 있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현장여건에 따라 램프나 계단, 옹벽, 조경석쌓기, 자연사면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용자로 하여금 프라이버시, 소음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및 주민공동시설 일체의 운영 및 유지관리는 입주민이 자체적으로 운영하여야 합니다.
- 각 동 출입구에서 쓰레기집적소까지의 거리는 동별로 상이합니다.
- 각 주동은 최상층에 설치된 옥상 구조물에 따라 시야 및 조망에 제약사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옥상 구조물의 공법, 크기, 위치, 모양, 색상, 마감재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관련법에 의거하여 주차 차로 및 출입구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3m 이상, 주차에 사용되는 부분의 높이는 주차바닥면으로부터 최소 2.1m 이상으로 설치하였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향후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으며(아파트와 경계가 분리되어 있지 아니함), 관리주체 및 주차시설 등에 대한 어떠한 권리 주장도 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부대시설 인근에는 실외기실 및 설비시설이 설치되며,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의 공조기와 냉각탑이 지상 3층에 설치되어 이와 인접한 일부세대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 및 진동 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 할 수 있으며 추후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는 아파트,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이 함께 계획된 복합시설로서 아파트의 지하주차구획은 타시설과 구분이 되어 있으나, 차량 출입구 및 일부 동선이 혼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아파트 및 지하주차장의 기초구조는 굴토 후 지내력시험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동의 주출입구는 주변에 따라 위치 및 구조형식 등이 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동 출입구의 형태(평면 형태, 외관 형태) 및 크기는 동 평면의 형상 및 진입 방식에 따라 각 동 및 동 출입구별로 상이합니다.
- 소방서 협의 결과 비상차량 동선 및 정차구간, 에어매트 설치구간 등 위치 및 규격이 변경될 수도 있으며, 에어매트 설치 위치에는 교목 식재는 배제되며, 소방서 점검 시 사다리차 전개에 문제가 되는 경우 일부 수목에 대해선 상부 가지 치기 또는 재배치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 쓰레기 분리 수거함 위치는 사용성 및 지자체 조례 등의 최종 검토결과에 따라 위치 및 개소가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자전거 보관소 위치 및 개소는 보행동선, 보관 편리성 등에 따라 현장 실시공사 각 동별로 위치가 삭제 또는 변경되거나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지하 엘리베이터 홀에 설치되는 설비 및 제습기 가동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비용은 관리비에 포함되어 부과됩니다.
- 주동 지하 및 지상층 로비 출입문은 마감을 고려하여 문 크기, 위치, 폭 등 세부계획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우편물 보관함의 설치 위치 및 개소는 실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옥상, 동 출입구, 부대시설, 조경 구간 등 단지 내 설치되는 난간의 형태, 높이, 재질, 색상 등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으며 일부 골조난간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옥상 난간 턱 높이조정, 난간형태 및 재질은 변경될 수 있으며, 단위세대 창조계획 및 공공부 창조 변경등에 따라 입면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단지 우·오수 배관은 옥외배관 최종검토 결과에 따라서 실시공 위치 및 개소가 조정 및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지하층 피트 공간은 지반현황에 따라 바닥레벨, 평면 및 구조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배치에 따라 일부세대는 주동간격이 좁아 프라이버시, 일조, 조망 등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단지 내 각종 인입(상, 하, 오수, 도시가스, 전기 등)계획은 인·허가과정 및 기반시설 설치계획에 따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내 지하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 엘리베이터에 면한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운행으로 인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상층 근접 세대의 경우 엘리베이터 기계실의 기계작동에 의한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위치 등을 반드시 확인한 후에 분양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인접동 및 인접세대의 배치 등에 따라 세대별로 조망과 향, 일조량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건본주택에서 필히 사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는 지하철 신분당선 광고중앙역과 인접하여 시공되는 바, 각 동별 지하철 운행에 따른 진동과 소음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단지 내 인접한 도로 및 주변시설 등으로 인해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계획된 부대복리시설 및 상업시설 등으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환경이 제약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상업시설(근린생활시설, 판매시설)이 지하3층~지상3층 까지 계획되어 있어, 일부 동의 저층세대는 해당 시설의 이용으로 인하여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 표고차이 및 주변시설 및 아파트로 인해 일부 세대의 경우 조망 기타 생활환경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 내부에 위치한 설비관련실(기계실, 전기실, 발전기실 팬룸실 등)로 인해 인근 해당 동 및 세대에 소음이 발생하거나 생활에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주차장에 쓰레기수거장이 위치하여, 수거차량 상시 접근에 따른 교통 통행의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며, 소음 및 진동, 냄새, 해충, 미관저하 등에 의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므로 사전 확인 바랍니다.
- 동별, 세대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침해가 발생하는 세대가 일부 존재하며 수분양자는 이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 차후 어떠한 민형사상의 소송이나 민원의 제기는 불가합니다.
- 외부 시설물(DA, 쓰레기집적소, 커뮤니티 실외기 설치공간 등)의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시 관계기관의 협의 및 디자인개선 등의 이유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시 홍보물의 모든 도면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컷으로 착공 및 설계변경 시 또는 실제 시공시 시설물의 배치, 구획, 면적, 모양 등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모형의 조경 및 식재, 주변 환경, 부지 고저차, 주거동 외관 디자인(외벽의 줄눈, 리브형태, 지붕모양, 입면마감재료, 색채, 축벽, 옥탑장식물, 물딩, 창틀모양 등), 부대복리시설의 색상 및 형태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보행출입구, 차량 진출입로는 기존 도로의 선형 경사도에 따라 본 공사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대지면적은 확정측량에 따라 면적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동일 면적 내에서 실배치가 변경될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재질, 색채, 가구 및 집기류 등이 다소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 저층부 외벽마감은 특화 디자인 계획에 따라 시공하며, 위치, 색채, 재질, 디자인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주변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조경 시설 및 식재의 종류, 수량 식재위치는 인허가청의 요청 혹은 입체적 단지 조화를 고려한 설계변경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외부 마감재 사양은 현장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현장 마감재 사양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기현장과 비교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저층세대의 외벽 마감재 설치에 따라 외부 창조는 형태 및 크기 등 이 변경될 수 있으며, 벽체 두께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동별, 층별, 라인별로 외부마감재료와 색상 및 외부창호 색상과 디테일이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옥상에 설치되는 시설물(옥상장식물, 구조공간, 태양광집광판, 설비시설물, 옥상조경 등)의 위치, 형태,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모형, 이미지 등에 제시된 마감재 및 제공집기는 실제 시공시 재질, 색상,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부대복리시설은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유지, 관리 및 운영을 하여야 합니다.
- 분양안내책자(카탈로그 등)에 표현된 커뮤니티시설(주민운동시설 등) 내부에 표현된 시설물, 냉난방기기, 집기류(기기 및 비품 등)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별도로 제공되지 않으며, 주민부대 복리시설에는 법적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시설 및 품목만 시공하므로 기타 시설, 기기 및 비품은 입주 후 입주민들이 자체적으로 구입하여 설치 및 운영, 유지, 보수, 관리하여야 합니다. (실제 시공될 시스템 등 설치품목은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과 비교하여 다소 변경될 수 있으니, 계약 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은 입주민이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만을 제공하며, 전자기기, 목재류 등은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습기에 영향을 받을 수 있으니 가급적 설치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공동시설(커뮤니티), 관리사무실, 지하주차장 등 부대복리시설 및 상업시설은 동선, 성능개선 및 대관 인·허가를 통하여 실시공시 위치, 다른 실로의 변경 및 통합, 사용자 동선, 입면 형태 (색채, 재질, 간판 형태 모양), 실내구획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건물은 지하3층에 광고중앙역(지하철역)과 연결되는 연결 보행통로가 설치 예정이며, 향후 관련기관 협의 등에 의하여 위치, 크기, 너비, 높이, 레벨, 마감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지하주차장의 경우 주차 편의성 등을 위하여 주차구획면의 위치 및 주차대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지하주차장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합리적인 구조계획 등을 위해 기둥 및 벽체의 크기, 위치, 두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부대시설과 근린생활시설 및 판매시설 배기팬이 지상3층 공조실 및 지상4층 옥상정원 등에 설치될 예정이며 위치 및 장소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장비운영에 따른 소음 또는 냄새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지상4층 외부에 있는 공동주택 입주민 전용 연결브릿지는 본 공사시 구조 및 상품성 개선, 관련기관 협의 등에 따라 디자인, 구조계획(기둥의 크기, 위치, 구조방식 등), 크기, 높이, 폭, 위치 등 세부계획은 변경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합니다.
- 비상시 지하1~3층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 이용자가 주거용 피난계단을 통해 피난층으로 대피 할 수 있으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해야 합니다.
-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과 함께 계획된 단지 특성상 이삿짐 차량은 지하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없어, 지상에 주차한 후 엘리베이터로 이삿짐을 운반하여야 하니, 반드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견본주택 및 단위세대

- 견본주택에 설치된 스프링클러 헤드, 감지기, 유도등, 스피커의 개수 및 위치는 견본주택용 소방시설로 본 시공 시 각 단위세대 타입별 관계법규에 의거하여 그 설치위치가 결정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환기구의 크기 및 디자인은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환기성능을 고려하여 위치 및 개소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평면 옵션, 마감재의 사양 및 디자인은 주택형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차이점을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수전류, 욕실 마감자재(양변기, 세면기, 휴지걸이, 수건걸이, 코너선반, 수건선반 등), 욕실FAN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 싱크장 하부에는 온수분배기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싱크장 하부의 디자인이 변경될 수 있으며 수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형 선택 시 주방 발코니 천장에는 각종 배관 및 덕트가 노출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는 발코니에는 드레인 및 선흡통이 노출되어 설치될 수 있으며, 위치 및 개수는 추가되거나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물을 사용하지 않는 공간으로 계획됩니다.
- 화장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주방에 가스배관, 렌지후드 환기덕트 등이 설치되며, 이로 인해 일부 가구의 깊이가 줄어들 수 있으며,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천장형 냉난방겸용 에어컨은 방문객을 위한 시설이며, 본 시공시 냉방전용 시스템에어컨이 유상옵션으로 제공됩니다.
- 발코니에는 상부 배수배관이 천장 내 설치될 수 있으며, 배수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적용된 마감재는 유사색상 및 무늬를 지닌 동등 수준의 타제품으로 대체 시공될 수 있으며 의장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모양이나 색상이 바뀔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 후 관계규정에 따라 폐쇄 또는 철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철거 전 견본주택 내부의 평면설계 및 마감자재 등은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속도, 탑승위치 등)는 사용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그에 대한 책임이 없음을 유념하시기 바라며 그로 인한 입주지연보상금 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PL창호(프레임, 유리등, 난간 등)의 제조사, 색상, 사양, 크기, 디자인, 손잡이, 하드웨어, 열림방향, 고정방식, 설치위치 등은 본 공사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지모형 및 단위세대는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견본주택 내에는 분양가 포함 품목, 전시품목 등이 혼합되어 시공·전시되어 있으나, 본 공사 시에는 전시품은 설치되지 않으며, 계약내용에 따라 시공됩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으로 시공되었으며, 기본형세대 선택 시 제외품목이나 기본품목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목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등 마감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건본주택에 설치된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조명,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세대 선택형 평면타입을 적용할 경우 조명 및 배선기구의 사양, 수량과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부위는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인 추위를 느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단위세대 구조에 따라 발코니 면적 및 확장면적에 차이가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의 엘리베이터 홀과 현관문 사이(전실)의 공간은 공용면적이므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의 서비스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 화재 시 대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이 설치되며, 본 공사 시 대피공간 바닥 및 벽체 마감, 레벨, 하부 턱 및 창호와 출입문의 크기, 형태, 위치, 사양, 색상, 제조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내에 실별 가구(장롱, 불박이장) 설치 시 필히 실측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마감, 단열재 두께 등의 차이로 도면에 표기된 크기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일부 세대의 발코니 장식물 부착 및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주택형별, 층수별, 주동별, 라인별, 침실별로 창호 사양(창틀, 하드웨어, 유리사양 등)이 상이하게 적용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분할위치, 손잡이, 시스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선홍통은 발코니, 실외기실 또는 PD내에 설치되며, 위치 및 개수는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전기(스위치, 콘센트, 월패드 등) 설비마감재 설치 위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모든 배선기구, 조명기구의 위치 및 수량, 재질, 문양(디자인) 등은 현장 여건 상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는 배수설비가 설치되지 않음을 기본으로 하며, 수전이 설치되지 않은 발코니에도 배수설비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이는 시공상 하자가 아니므로 하자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시 천장틀의 종류 및 규격은 천장구성 및 마감재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고정형 가구 하부는 난방코일의 간격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 실시공 시 「건축법 시행규칙」[별표5] 건축허용오차(제20조 관련)내의 시공 오차가 발생할 수 있고 이로 인해 건본주택과 다소 다르게 시공될 수 있으며, 이는 시공상 하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세대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으며, 확장부위에는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고 직접 외기에 면해 상대적 추위를 느낄 수 있으나 결로현상은 입주자의 관리상의 문제이지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시공 상의 문제가 아니므로 결로 및 이로 인한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 등은 금속성 재질로서 외기에 직접 면하므로 계절에 따라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이는 하자가 아니며 입주자가 관리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 실외기실 갤러리(루버) 창 프레임 및 갤러리의 색상은 외부 색채 디자인에 따라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세대 내 환기가 부족할 경우 내/외부의 온도차이 및 습기로 인하여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입주자는 결로에 의한 곰팡이 발생 등 2차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환기를 시키셔야 하며 특히 입주 후 첫째 겨울은 환기에 각별히 유의하여야 합니다. 특히 욕실 샤워기 및 다량의 온수 사용 시 욕실 환기를 하셔야 하며, 욕실 환기 미비, 거실, 주방 등에 과도한 가습기 사용이나 음식물 조리 및 다량의 화분(실내 또는 발코니)은 결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므로 가급적 사용을 자제하시기 바라며 환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열공사 외 환기불량, 사용상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결로에 대해서 사업주체의 책임이 없습니다.
- 계약자는 세대 각 실 및 발코니 외부 창호에 무리하게 힘을 가하거나 전입, 전출, 이사 시 이삿짐 장비가 직접적으로 접촉하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이삿짐 등은 해당동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창호는 층수, 향에 의한 바람의 영향 차이로 인해 유리의 강도 및 두께가 달라질 수 있으며, 바람 등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건본주택에 제시된 형태와 다르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와 위치는 건본주택 기준으로 시공되며 경우에 따라 설계변경 등의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건본주택은 기준층 세대로 꾸며져 있으며 층별, 라인별로 천장과 및 출입구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건본주택을 방문하여 해당 평면도를 확인 후 청약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외부 입면계획에 따라 장식물 등이 세대 외벽에 설치될 수 있습니다.
- 공사 진행 중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설계변경이 이루어질 수 있고, 추후 본 주택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에 대한 하자의 판단 기준은 사용승인도면에 따르며 계약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에 설치되는 창호는 기능 및 미관개선을 위하여 형태 및 재질·사양이 실시공시 인·허가 협의완료 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외벽은 발코니 확장 등으로 단열재 추가 설치 시 구조재 및 가구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공 시 자체특성, 품질, 미관 향상, 마감시공 방식 차이에 따라 건본주택 시공방식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욕실은 바닥난방이 설치됩니다.(양변기/세면기 하부, 샤워부스 내부 및 욕조 하부 제외)
- 욕실 천장에 급수를 위한 분배기 및 상부층 배수배관이 설치 됨에 따라 유지관리를 위한 점검구가 천장에 설치됩니다.
- 아파트 외부 창호는 내풍압 구조 검토에 따라 세대별, 층수 별로 창호 사양(창틀, 소프트웨어, 유리등)이 변경 및 축소될 수 있으며, 세대에 설치되는 창호의 개폐방향, 날개벽체 및 분할시공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가스배관 및 계량기가 발코니에 설치되며, 위치는 타입별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은 발코니 확장형 세대를 전시하였으며, 비확장형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며, 추가선택옵션 등에 따라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될 수 있으니,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보조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침대, 책상 등의 이동식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소품 등은 세대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제외 품목입니다.
- 견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제조회사의 도산, 특허권 등 부득이한 경우 및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이유로, 본 공사 및 하자보수 시 동등수준의 다른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계약자'의 개별적인 동의를 요하지 않습니다.
- 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마감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 통신단자함, 세대분전함, 스위치, 콘센트, 보일러 온도조절기 등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의 마감재 종류 및 두께에 따라 내부공간이 협소하거나 안목치수가 도면 및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폭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인테리어 마감재의 다양한 두께로 인하여 안목치수가 도면과 상이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설치되는 가구의 사이즈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가전 기기 등 설치 공간의 크기는 견본주택과 같으며 그 보다 큰 가전 기기는 해당 공간에 설치될 수 없습니다.
- 각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실내에 세대분전반, 세대통신단자함 등이 개별 또는 통합 설치되며, 이로 인한 일부 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평면 타입에 따라 적용 품목(가구, 가전, 등기구, 스위치 등)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은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공동주택 특성상 세대 내 가구배치, 평면배치, 기타 품목 시공위치는 입주자 개인별 변경 요청을 할 수 없으며, 변경 필요 시 준공 및 시설풀 인수인계 후 입주자 개인이 직접 시행하여야 합니다.
- 유상옵션품목(가구, 가전 등)은 계약 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주방장, 침실 반침장, 안방 붙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거울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욕실 거울의 경우 보호페인트가 입혀졌더라도, 자재특성(은 성분)상 산성, 알칼리성 세제와 쉽게 화학반응하며, 습기에 의해 변색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바 욕실 환기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하자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책임을 집니다.
- 견본주택에 연출되어 있는 스포트라이트, 스탠드 조명 및 팬던트는 전시용으로 실시공시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벽, 바닥 타일의 줄눈 위치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줄눈 및 타일 사이즈가 일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각 주택형별 유·무상옵션 항목 및 확장공사 포함 항목은 평면 여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부욕실 단차는 바닥 구배시공으로 인하여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욕실의 단차는 침실내부로 물넘김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됩니다.
- 단위세대의 내부 단차부위(발코니, 욕실, 현관)는 변경될 수 있으며, 출입문 개폐 시 신발 걸림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주방 상부장 뒷면으로 가스배관이 설치될 경우 가스배관이 설치되는 상부장은 깊이가 다를 수 있고, 일부 배관이 노출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일부가구 및 선반의 구조가 견본주택 및 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설비 배관상의 이유로 거실 및 침실1(안방)에 설치되는 커튼박스 크기는 타입 별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간섭부분의 가구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으며, 거실 및 안방을 제외한 모든실에는 커튼박스가 설치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각 선택형 평면(유,무상)에 따라 가구, 도어 구성 및 크기 등이 상이하오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시 타일류, 엔지니어드스톤, 천연석 및 인조대리석(거실 벽, 거실 아트월, 주방 벽/상판(유상옵션), 욕실 벽/바닥, 현관/발코니 바닥 등)의 패턴 및 결(베인)은 규칙적이지 않고 랜덤하게 시공되며 색상, 줄눈 나누기 및 간격, 줄눈 두께 등은 다르거나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중문 등 유리도어(슬라이딩, 여닫이, 픽스)는 유리 벽체 및 도어, 프레임의 사양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현관 중문에는 모헤어 또는 가스켓이 설치되며 틈새를 통한 누기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우물천장과 걸레받이는 본 시공시 하자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PVC 위 래핑 또는 도장으로 시공될 수 있습니다.(견본주택의 시공자재와는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 현관문 및 실외기실도어, 그릴의 도장, 색상 및 디자인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견본주택 및 카탈로그에 표기된 유·무상 여부의 기준은 기본확장형 비용을 기준으로 작성됩니다.
- 철제방화문(현관 등)은 방화성능을 고려하여 본 공사 시 하부실, 상하좌우 프레임 형상 및 재질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우물천장은 천장 내 설비배관 등에 의하여 천장고 및 길이, 크기, 높이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커튼박스 길이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시스템가구 적용부위 및 내부구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전열교환 환기장비가 실외기실/발코니 등 천장에 노출 설치되며 위치는 변경될 수 있고 작동 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창호류, 가구류, 바닥재, 타일류, 천연가공석 등 마감재의 색상, 디자인, 재질단차, 코너, 마감재접합부, 패턴 등은 실시공시 견본주택과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유리도어(슬라이딩도어 등)의 각종 디테일(프레임, 레일, 유리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방가구 및 붙박이가구의 후면 및 바닥, 벽체 등은 마감재 시공범위에서 제외됩니다.
- 본 공사 시 각종 도어 및 창호류의 사양(유리사양, 창틀 디자인, 손잡이, 창호크기, 루버형태, 재질, 색상, 제조사, 열림방향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커튼박스 시공 시 가구 간섭부분(유상옵션 평면선택제 포함)에 가구 사이즈가 일부 줄어들 수 있습니다.

- 침실2, 침실3, 창호가 설치되는 주방, 드레스룸, 다용도실, 발코니에는 커튼박스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주방상판 이음 부분이 노출되거나 변경될 수 있으며, 이음 부분의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픽처레일의 위치, 수량, 길이 및 사양은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으며, 평형 별 상이 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타입 별 주방내부 및 가구구성, 하드웨어, 액세서리 일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평면 선택제 유상옵선 선택 시 평형별 또는 기본형 평면 대비 슬라이딩도어 및 내부벽체 위치 및 간격은 서로 상이할 수 있으며, 슬라이딩도어는 실내창호로써 기밀성이 확보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욕실 내 벽체 및 바닥 타일나누기는 견본주택과 상이할 수 있으며, 타일의 색상 및 패턴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거실 및 침실1(안방)의 커튼박스 위치 및 사이즈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거실과 안방을 제외한 모든 실에는 커튼박스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 욕실 문턱 높이는 물넘침 방지가 목적이며, 욕실화의 높이와 관계가 없습니다.
-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하부,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침실, 욕실 등의 벽체 두께 변경에 따라 문틀의 폭(벽체 두께면)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코킹 시공 부위는 달라질 수 있으며, 본 공사 시 욕실 천장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빌트인 가전의 전원 연결을 위해 가구 내 전선 인출구가 타공 될 수 있습니다.
- 불박이장, 신발장, 욕실장 등 설치되는 가구의 비노출면(후면, 바닥, 천장)에는 마루, 타일, 도배 등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며, 주방가구의 경우 후면, 천장에는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으나 바닥에는 페인트로 마감 됩니다
- 욕실장 및 욕실거울 측면, 후면에는 타일이 시공되지 않습니다.
- 일부 단위세대의 경우 대칭형으로 계획되어 침실, 거실, 주방 등의 향, 조망이 서로 다를 수 있으니 계약 전 해당세대의 향, 조망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확장형과 비확장형 인접 세대간 경계벽에 단열을 위한 단열재 및 조적벽체가 설치되어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면적이 감소될 수 있습니다.
- 일부세대의 경우 측벽 단열재 설치 여부에 따라 동일타입의 실외기실, 발코니 내부쪽이 서로 상이할 수 있으니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외기실 내부는 물건 적재장소가 아니므로 적재 시 에어컨 효율저하 및 결로에 의한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대피공간 바닥마감의 색상, 마감사양, 광택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본 공사 시 실외기실 그릴창의 제조사, 재질, 사양, 크기, 디자인, 색상, 열림방향, 고정방식, 설치위치, 하부설 디테일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단지의 세대내 커튼박스는 안방(침실1)과 거실창호상부에만 설치되며, 그 외의 창호 상부에는 커튼박스가 설치되지 않으니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69 타입의 경우 안방(침실1)과 발코니 사이에 있는 분합문은 안방 커튼박스 상부로 스프링클러 배관이 위치하오니 커튼박스 상부로 타공 등 작업 시 도면 등을 확인하시어 스프링클러 배관이 파손되지 않도록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안방 분합문 높이는 실시설계 과정에서 소방배관 설계 등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세대 내 거실의 아트월 설치, 복도, 침실, 주방 등의 벽체마감(마감두께 등)으로 인하여 본 아파트의 인허가 도면보다 안목치수가 줄어들 수 있으며, 이에 대해 계약자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계약자 선택사항에 따라 세대 내부의 마감재 및 가구에 대한 마감치수(두께, 폭, 넓이)가 설계도면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설계도면에 미표기 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또는 '사업주체가 선정한 감리자'가 성능시험 등을 통하여 품질 또는 성능 확인 후 현장 시공에 적합하다고 승인하여 설치한 자재 또는 제품에 대하여, 시공사가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에 따라 시공한 경우 설치(시공) 당시부터 성능미달의 제품을 설치하였다거나 시공 및 설치상의 하자가 있었음이 밝혀지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입주 이후에 성능 미달 사실이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시공사에 품질 또는 성능미달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책임을 물을 수 없습니다.
- 전항의 경우 입주 이후 '수분양자(입주자)'의 사용에 따른 자재 또는 제품의 성능저하 발생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가 유지 보수 및 관리하여야 하며, 입주 이후에 발생하는 유지 보수 및 관리상의 문제로 인한 성능미달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수분양자(입주자)' 또는 '관리주체' 책임입니다.
- 분양 시 홍보물 및 실내투시도에 표시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내·외부창호는 본 공사 시 제조사, 사양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생활가구류(침대, 소파, 책상, 의자 등), 생활가전류(냉장고, TV, 밥솥, 전자레인지 등), 침장 및 커튼류, 인테리어 소품류(사진, 액자, 화분 등)는 연출용 전시품입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모형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모형 및 조감도에 표현된 각 주거동 외벽의 리브(줄눈)형태 및 지붕모양, 형태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주거동 저층부 및 고층부 등에 표현된 장식물의 형태는 실제 시공 시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급주택의 실내 마감자재 중 미표기 사항 등 카탈로그에 포함되지 않은 설계내용은 사업계획승인 도면에 따라 시공됩니다.
- 홍보 카탈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주변시설(학교, 도로망 등)은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시행/허가관청, 지방자치단체, 국가시책 및 개별 소유주의 이용 용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의 책임은 없습니다.
- 견본주택에는 전용 69㎡타입이 설치되어 있으며, 설치되지 않은 그 밖의 주택형 및 타입은 단위세대 모형 또는 이미지를 참고 바라며, 계약전에 평면 형태, 가구배치, 실면적 등 견본주택 설치 주택형과 다른 사항을 숙지하여 계약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에 건립되지 않은 타입은 건립타입과 평면 및 인테리어, 마감적용부위 등에 있어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분양 카탈로그를 필히 확인하여야 합니다.
- 사이버 견본주택의 VR동영상(견본주택 건립세대에 한함, 그 외 타입은 이미지 제공)은 견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VR동영상이므로 사이버 견본주택

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견본주택을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 바랍니다.

■ 기계 / 전기 / 설비

- 견본주택내에서 확인이 곤란한 사항인 시설물(엘리베이터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허가도서(사용승인도서 포함)에 준합니다.
- 전기/통신, 맨홀 등 입입 장비의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서 최종 확정되며, 관련 사업자와 협의 결과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설계상 일부 세대(최상층 및 기계실 인접세대 포함)는 엘리베이터와 면하거나 인접하며, 엘리베이터의 운행 중에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이 전달 될 수 있습니다.
- 일부 아파트 지붕에는 경관조명, 태양광 집광판 등이 설치 될 수 있으며, 상세계획(설치면적 및 위치, 형태, 사양, 디자인 등)은 시공 단계에 최종 확정되며 인.허가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공용부위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일체의 비용(공용 및 경관조명, 단지홍보 사인물, 영구배수시스템 유지, 휴대폰 및 인터넷을 이용한 홈네트워크 서비스, 보안/방범 시설 운영과 유지비용 등)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스마트폰 인증으로 공동현관 출입이 가능한 스마트폰 키 시스템이 적용되어 있어 보조 출입키(카드형 RF키)는 세대 당 2개가 지급 됩니다.
- 스마트폰 키 및 스마트폰 자동주차 위치 저장 시스템은 스마트폰의 Bluetooth 기능이 활성화 되어 있어야 하며, 일부 스마트폰 기기에서는 이용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스마트폰 자동 주차위치 저장 시스템은 세대별 등록된 차량을 지하주차장에 주차할 경우 사용 가능합니다.
- 세대 내 마감 상황(타일 및 천연가공석의 줄눈나누기, 도배와 가구 설치내용 등)을 고려하여 월패드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별 발코니 확장-비확장형 선택 및 옵션형 평면 선택 유·무에 따라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의 디자인, 사양, 위치, 설치방향,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세대 신발장 또는 창고, 기타 세대내부에 전기분전반 및 통신단자함이 통합(또는 개별)으로 설치되며, 위치 및 형태는 변경 될 수 있습니다.
- 침실, 거실, 주방의 조명스위치는 이동 및 취침준비 등을 고려하여 마지막 소등되는 회로가 몇 초간 지연 후 소등되는 조명스위치가 설치됩니다.
- 하이오티(Hi-oT) (카투홈 서비스 내용 포함)및 보이스홈(유상옵션이며, 선택 시 홈투카 서비스 이용 가능) 서비스는 현대건설 특화 시스템이며, 아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야 합니다.
- 하이오티(Hi-oT) 및 보이스홈(유상옵션)서비스의 경우 이동통신사/포털사/제휴사의 서비스가 포함될 수 있으며, 해당업체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및 사용제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보이스홈(유상옵션)가전기기 제어서비스는 하이오티 연동된 IoT가전기기를 구매하고 세대 내 무선인터넷 환경이 구축된 경우 사용이 가능하며, 해당 기기 제조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제한 및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서비스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하이오티(Hi-oT) 서비스 및 보이스홈(유상옵션) 서비스는 성능 개선이나 입주 시 기술영업 환경 등의 사유로 제공되는 서비스의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 후 플랫폼 운영사의 정책에 따라 사용요금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카투홈, 홈투카 서비스는 현대/기아차 19년 이후 생산 모델 중 카투홈, 홈투카 기능이 있는 차량으로 해당 차량의 커넥티드서비스(블루링크, UVO, 제네시스)에 가입된 경우에 한하여 사용 가능합니다. 해당 서비스는 제조사의 운영 및 요금정책에 따라 기능 및 비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제조사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야 합니다.
- 주방TV 후면에 주방TV 전원 및 통신단자용 통합콘센트가 주방 타일면에 노출 설치되며 전원선 및 통신케이블이 노출됩니다.
- 보이스홈 옵션은 주택형 구분 없이 한 가지 안(거실/안방)만 선택 가능합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 시 안방 스위치 위에 음성인식 스피커가 별도로 설치됩니다.
- 보이스홈 옵션 선택 시 거실 10인치 월패드가 13인치 음성인식 월패드로 변경 설치 되며, 거실 스위치 및 온도조절기가 월패드 밑에 별도로 설치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공급계약 체결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배치도 및 평면도, 모형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이며, 대지 주변현황, 본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

※ 도로 인접 및 주변 부지의 공사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청약 및 계약에 임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업주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공급(분양)계약서의 일부로 구성되며, 청약자는 필히 본 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상 착오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견본주택 또는 사업주체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기재사항의 오류가 있을 시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

■ 관리형토지신탁 특약사항

- 본 사업은 시행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주)이 시행수탁자 겸 분양사업자인 ㈜무궁화신탁에게 사업부지 및 건축주 명의를 신탁하여 진행하는 관리형토지신탁 사업으로, 실질적인 사업주체는 시행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주)임을 인지하며, ㈜무궁화신탁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의 수탁자로서 의무를 부담합니다.
- ㈜무궁화신탁은 관련 법률 및 분양계약상 매도인의 제반의무(분양대금 반환, 지체상금 배상, 하자보수책임을 포함하며 이에 한하지 않는다)를 현존하는 신탁재산(현금) 및 신탁계약의 업무범위 내에서만 부담하며, 이를 넘는 책임은 정원산업개발(주)과 현대건설(주)이 부담합니다.
- 신탁계약 상 위탁사의 지위가 양도될 수 있으며, 위탁자의 지위가 양도되는 경우 수분양자는 이 사실을 통지받은 시점에 양도에 동의한 것으로 봅니다. 시공 상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은 시공사 및 위탁자에게 있음을 인지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시공사(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 교체 시 수분양자는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분양자는 본 사업이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관리형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사업정산 내지 신탁해지(일부해지 및 일부세대 소유권 이전 포함) 등의 사유로 인하여 위탁자와 수탁자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되는 경우, 시행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의 지위가 시행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주)로 자동변경되며 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의 지위 일체가 위탁자인 정원산업개발(주)에게 면책적으로 이전되는 바, 수탁자인 ㈜무궁화신탁은 매도인의 담보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에 동의하며, ㈜무궁화신탁 및 정원산업개발(주)에게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 수분양자가 납부하는 분양대금은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의 원리금 등 분양목적물의 신축을 위한 사업비로 사용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수분양자는 ㈜무궁화신탁, 정원산업개발(주) 및 현대건설(주)에게 일체 이익을 제기하지 않습니다.

■ 분양관련 문의 및 견본주택 위치 안내

- 견본주택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이의동 1336번지
- 사이버 견본주택 : <http://www.hillstate.co.kr/s/#gwanggyojoongang>
- 분양문의 : 031-294-1200